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범죄를 물리치는 효과적 무기로 만드는데에는 안전한 교도소가 필수적이다. 유죄 선고를 받았건 재판을 기다리고 있건 간에 수용자들이 교도소의 보호에 맡겨졌을 때에는 그들이 합법적으로 석방될 때까지 그 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점을 수용자들과 일반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도소가 이 나라의 범죄율의 감소에 영구적으로 완벽하게 공헌할 수 있는 길도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을 처우하는 방법에 달려있다. 우리가 교도관들의 전문적 직업정신과 인권존중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1998년 남아프리카의 교도소 직원들에게 한 연설에서

이 지침서는 교도소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즉 수용자, 교도소직원, 접견자 등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윤리적 맥락에서 교도소를 관리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윤리적 맥락은 그 호소력의 면에서 보편적이어야 하는데 국제 인권 문서들이 이러한 보편성을 제공하고 있다.

교도소 관리 문제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법을 정당화하는 한 가지 실천적 이유도 있다. 그것은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식의 관리는 교도소를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이 강조하는 바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교육과정에 부가되어야 할 또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이 개념이 교도소를 원활하게 관리하는데 토대가 되고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도소 관리에 대한 인권적 접근

교도관을 위한 지침서

앤드루 코일
국제 교도소 연구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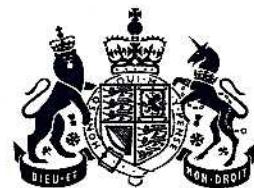
교도소 관리에 대한 인권적 접근

교도관을 위한 지침서

앤드루 코일

KING'S
College
LONDON

런던 킹즈 칼리지 부설
국제 교도소 연구 센터



영국 외무부

머리말

국제 교도소 연구 센터 간행

저자의 도덕적 권리가 주장됨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옹호하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시대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는 현실과 이상이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리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인권 기준의 실천이 다만 추상적 이론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권 기준은 정부의 일상적 업무에서 실천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2001년 여름까지 영국 정부의 교정 담당 차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본인은 사회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쳐우하는 방법을 보면 인권이 존중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강력히 믿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교도소 업무에 대한 지침의 역할을 하는 다양한 종류의 국제 조약들과 국제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협정이 실천되도록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표괄적인 지침서의 발간 목적은 교도소 개혁에 관해 세계적으로 합의된 기준들을 교도소 직원들을 위한 실천 지침으로 재해석해서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이 저서는 국제 교도소 연구 센터의 소장으로 그의 전문적 지식을 보급하기 전 다년간 교도소를 관리한 현장 경험이 있는 앤드루 코일씨가 저술한 것입니다. 본인은 이 저서가 정부의 각료, 국제 기구, 교도소 직원 등 모두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지침서에 제시된 기준들이 실천된다면 교도소 업무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싹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를 향해 또 하나의 중요한 발걸음을 떼어놓게 될 것입니다.

번역 : 장은명
영문학 박사 · 중앙대 강사
감수 : 송태호
경기대학교 교정학과 교수
발행처 : 주한 영국대사관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Jack Straw".

하원 의원 잭 스트로

감사의 말씀

이 지침서의 저술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다.

고문단 위원들의 이름은 서론에서 언급했다.

세계 곳곳에서 교도소의 관리 문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고 있는 본 국제 교도소 연구 센터(ICPS)의 모든 회원들은 그들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로 직접적, 간접적 도움을 주었다.

앤드루 바클레이와 아서 드 프리싱이 특별한 도움을 주었다.

메리 머피는 이 지침서의 초고를 정리해 주었다.

제임스 헤인즈는 이 책의 원고를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주었고 훌륭한 관행의 예를 조사하는 데 오랜 시간을 보냈다.

비비언 스톤은 이 지침서의 최종적 내용과 체제의 결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ICPS의 비비언 프랜시스, 안톤 셀루파노프, 펠케 반 데르 모일렌, 헬렌 페어는 귀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위에 언급한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지침서는 영국 외무부의 아낌없는 재정 지원이 없었다면 발간될 수 없었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목 차

1	서 론	9
2	교도소 직원과 교도 행정	13
	체 제 가치와 의사전달 정부 조직 내의 교도소 직원 채용 직원 교육 직원 채용의 조건	
3	수용자들은 인간이다	35
	체 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고문과 학대 입소 절차 생활 환경 종교	
4	수용자들과 건강관리	57
	체 제 진료권 보건 환경 개별적 치료 의무 직원	
5	교도소를 보안이 잘 된 상태로 안전하고 규율 있게 운영하는 방법	69
	체 제 보안과 사회 재통합 프로그램 간의 균형 보안과 외부 세계와의 접촉 간의 균형 통제와 잘 정돈된 지역사회 간의 균형 통제와 질서가 붕괴되는 경우 중구금 보안 상황 문제 수용자	
6	징계 절차와 처벌	87
	체 제 징계 절차의 공정성 공정하고 균형 잡힌 처벌 독방 수용	
7	건설적 활동과 사회 제통합	95
	체 제 수용자를 개인으로 인식 작업과 기술 교육 교육과 문화적 활동 석방에 대한 준비	
8	외부 세계와의 접촉	111
	체 제 접견, 서신, 전화 독서 자료, 텔레비전, 라디오를 이용할 권리 외국인 수용자	

서 론

1

9 요구와 불평	121
체 제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실천 방법	
10 감사 절차	127
체 제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이 원칙을 실천에 옮기는 방법	
감사에 대한 보고와 대응	
11 미결 수용자들과 재판 없이 구금 중인 모든 다른 수용자들	133
체 제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실천 방법	
법적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미결 수용자들의 관리	
재판 없이 구금 중인 모든 수용자들	
12 소년과 아동 수용자	143
체 제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실천 방법	
13 여성 수용자	149
체 제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실천 방법	
14 종신 수용자와 장기 수용자	157
체 제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실천 방법	
노령 수용자	
15 사형 선고를 받은 수용자	163
체 제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실천 방법	
16 다양성에 대한 인식	167
체 제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실천 방법	
17 교도소의 활용과 구금의 대안들	171
체 제	
선고 후의 처분	
비구금형의 선고	
부 록	175
관련 인권 문서 목록	
색 인	177

이 지침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01 지침서는 교도소와 연관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저술되었다. 의회에서 교도소 행정에 대해 해명할 의무가 있는 정부 각료들, 법무부 공무원이나 교도소 문제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 또 국제 연합, 유럽 이사회, 미주 국가 기구, 아프리카 연합, 국제 적십자 위원회, 세계 보건 기구 등의 정부간 기구들이 이 지침서의 독자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또 다양한 비정부 기구들과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흥미가 있을 것이다. 또 가능한 경우에는 이 책을 죄수들에게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 책은 주로 교도소와 죄수들과 직접 접촉하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술되었다. 여기에는 국가적, 지역적 교도소 운영자들이 포함된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실제로 교도소에서 근무하며 매일 죄수들과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술되었다.

일련의 명확한 원칙들

01 지침서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을 보면 교도소 관리의 복잡성과 교도소의 운영을 책임진 사람들에게 어떠한 다양한 기술들이 요구되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지침서에서 다루어진 문제점들을 보면 훌륭하고 모범적인 교도소 관리를 실현하려면 어떠한 일련의 공통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고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주제들을 일련의 명확한 원칙들에 근거하여 고찰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지침서는 전 세계의 어떠한 교도소 체제에도 적용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저술되었으므로 판단의 기준이 될 이 일련의 원칙들은 반드시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특정한 문화권이나 어느 한 국가나 지역에서만 수용되는 기준들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이 지침서는 관련된 국제 인권 기준을 각 장의 출발점으로 삼음으로써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국제적 기준

01 기준들은 대개의 경우 국제 연합을 통해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은 것들이다. 시민·정치권에 대한 국제 규약이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등의 주요한 인권 보장 문서들은 이미 이 조약들을 비준하거나 이 조약들에 가맹한 모든 국가들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이 조약들에는 대체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된 사항들이 언급되어 있다.

또 특히 수용자들과 구금 상황에 관한 국제 문서들도 다수 있다. 이 문서들의 원칙들, 최소한의 규정, 또는 지침에서 명시된 상세한 기준은 법적 조약들에 포함된 광범위한 원칙들을 보완해 주는 귀중한 요소이다. 그러한 기준들로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1957), 어떤 형태로든 구금이나 수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원칙(1988),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원칙(1990), 소년 사법의 운영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1985) 등이 있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문서들도 다수 있다. 그러한 문서들로는 법집행관의 행동 규약(1979), 수용자와 피구금 자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건강관리 요원, 특히 의사의 역할에 관한 진료 윤리적 원칙(1982), 무력과 화기의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1990) 등이 있다.

국제적 기준

이러한 국제적 기준들을 다수의 지역적 인권 관련 문서들이 보완해주고 있다. 유럽의 인권 관련 문서들로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1953), 고문 및 비인도적·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유럽 협약(1989), 유럽 교도소 규정(1987) 등이 있다. 미주 인권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인권과 민족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협정은 1986년 발효되었다.

개별적 국가들이 국제적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이행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각 지역의 사법 기관이 유용한 판단 기준이 된다. 남·북·중앙 아메리카에서는 미주 국가 간 인권 법원이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유럽 인권 법원이 그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적 감시단체

유럽 이사회 회원국들 안에서는 구금 장소에서 인권 기준이 준수되는가 여부를 고문 및 비인도적·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 위원회가 감시한다. 1997년 인권과 민족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위원회는 교도소 상황에 대한 특별 보고자를 임명했다. 또 국제 연합은 고문 방지 협약에 대한 선택 의정서의 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채택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적 단체가 구금 장소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제도가 확립되고 각 국의 독립적 감시단이 그러한 장소들을 지속적, 정기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이 제도가 더욱 더 완벽히 시행되게 할 것이다.

적법성

훌륭한 교도소 관리에 대한 이 지침서의 적법성은 이 책이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러한 국제적 인권 기준에 확고히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발생한다.

실제적 경험

그러나 교도소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국제적 기준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참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이 이 기준들을 일상의 업무에서 실행하려면 그들은 그것들을 해석하고 실제 업무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지침서는 바로 이 점에 대해 길잡이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 이 점에서 이 책의 적법성은 이 지침서의 저술에 참여해 온 사람들의 실제 경험에서 나온다. 이 책의 책임 집필자는 24년 동안 교도소 소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국제적 고문단도 상당한 지원을 제공했는데 이 고문단의 위원들 모두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각각 교도소에서 근무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다.

리아주던 아메드 - 인도 하이데라바드주 교도소 부감찰감

리처드 쿠이레 - 가나 교정청장

줄리타 웹그루버 - 전(前)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교정청장

팻트릭 맥머너스 - 전 미국 캔저스주 교정부 장관

드미트리 판크라토프 - 러시아 연방 법무부 사법행정원 부원장

그 위에 국제 교도소 연구 센터의 연구원들과 준회원들은 인권과 교도소 관리 문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도소에 근무하는 세계 각 지역의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얻은 광범위한 경험을 활용했다.

원활한 교도소 관리를 위해서는 인권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국제 교도소 연구 센터는 인권이라는 맥락에서 실제적인 교도소 관리에 대한 모든 연구 계획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 지침서의 여러 장(章)에서는 교도소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수용자, 교도소 직원, 집전자 등의 인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윤리적 맥락에서 교도소를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며 국제적 인권 관련 문서들에는 이러한 보편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교도소 관리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법이 정당하다는 보다 실용적인 이유도 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이 방법은 교도소 관리에 대한 진보적이거나 유화적인 접근 방법은 아니다. 이 지침서의 고문단의 위원들과 이 지침서의 저술에 참여한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도소들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그들은 이러한 관리 방식이 교도소를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 센터의 연구원들은 다양한 문화권의 여러 국가들의 교도소들에서 제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이러한 접근 방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 왔다. 이러한 방법은 즉각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국제적 기준을 그들의 일상적 업무와 연관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이 강조하는 바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단지 교육 과정에 부가되어야 할 또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이 개념이 교도소를 잘 관리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적 요소라는 사실이다.

부가적 도구

근년에 와서 이 지침서에서 다루어진 문제점들 중 몇 가지를 다른 유용한 저서들이 여럿 간행된 바 있다. 그러한 저서들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인권과 교도소 - 교도관들을 위한 인권 교육 지침서 (UN 인권 담당 고등 판무관 사무실이 2000년 제네바에서 시험판으로 간행)

표준 작업 기준 (국제 행형 개혁 기구가 2001년 런던에서 간행, 2판)

고문 보고서 (영국 에섹스 대학교에서 2000년 간행)

이 지침서도 위의 저서들이나 그 밖의 유사한 저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원활한 교도소 관리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 책은 다루는 주제들의 면에서 포괄적인 책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교도소 관리라는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 모든 주제를 남김 없이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책에서는 교도소 관리라는 문제에서 주요한 특징들을 선정해야만 했다. 교도소라는 환경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점들이 이 지침서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교도소 직원과 교도 행정

2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교도소 연구 센터(ICPS)는 독자들의 의견과 개정판에서 부가할 수도 있는 사항들에 대한 견의를 환영한다.

전문 용어에 대한 해명

몇몇 사법 관할 지역에서는 구금 장소에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는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보안 상태에서 구금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지에 따라 구금 장소를 가리키는 용어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하급 법정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단기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구금된 장소를 대개 구치소라고 부르고 유죄 선고를 받은 죄수들이 구금된 장소는 교도소라고 부른다. 러시아 연방에는 교도소 밖에 없다. 이 용어가 최고의 보안 상태를 갖춘 구금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른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보내는 곳은 대개 유형지라고 불린다.

수용자

구금되는 사람들도 그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상이한 명칭으로 불린다.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공판 전 수용자, 공판 중인 수용자, 재유치자 등으로 불려지고 흔히 피구금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지침서에서는 '교도소'라는 단어는 모든 구금 장소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으며 '수용자'라는 단어는 그러한 장소에 구금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단어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본문의 내용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체제

중요한 공부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교도소의 업무는 공무이다. 교도소는 학교나 병원과 마찬가지로 공익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시민들의 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는 장소이다. 교도소 당국은 선거에 의해 구성된 의회에 해명을 할 책임이 있으며 국민은 교도소의 상태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의 각료들과 고위 관료들은 자신들이 교도소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교도소 직원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어야 하며 국민들에게는 교도소 행정이 중요한 공무라는 사실을 자주 상기시켜야 한다.

교도소 관리의 윤리적 근거

교도소 관리는 윤리적 틀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강력한 윤리적 맥락이 없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른 무리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락되어 있는 상황은 권한이 남용되는 상황으로 변하기 쉽다. 윤리적 맥락은 단순히 죄수들에 대한 개별적 직원들의 행동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다. 수감의 윤리적 근거에 대한 의식이 상층부로부터 하층부에 이르기까지 관리 과정을 지배해야 한다. 교도소 당국이 정확한 과정을 강조한다면 업무상의 효율성을 요구한다든가 윤리적 의무에 대한 사전 고찰이 없이 관리상의 목표만 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든가 하면 엄청나게 비인도적 행위가 저질리질 수 있다. 교도소 당국이 형식적 과정과 절차에만 전력을 기울인다면 직원들은 교도소가 자동차나 세탁기를 생산하는 공장과는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될 것이다. 교도소 관리는 일차적으로 직원들과 죄수들을 포함해 인간들을 관리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효과와 능률을 넘어서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맨 먼저 항상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

직원과 수용자의 관계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교도소에 대해 생각할 때 교도소의 물리적 측면, 즉 벽, 울타리, 자물쇠로 잡긴 문과 창살이 설치된 창문이 있는 건물 등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교도소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인간적 차원이다. 교도소는 일차적으로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교도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 구성된 두 집단은 수용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직원들이다. 원활한 교도소 관리의 열쇠는 이 두 집단 사이의 관계가 어떤 성질의 것이냐 하는 점이다.

훌륭한 지도력이 필수적이다

교도소와 교도소라는 제도를 책임진 사람들은 형식적, 관리적 차원 너머를 내다보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휘해야 할 책임을 진 직원들에게, 그들이 매일의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가치 있다는 의식과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명확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하며 교도소 관리라는 어려운 업

무에서 최고의 기준을 유지하려는 결의를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다.

우수한 직원의 필요성

대개 교도소들은 수용자들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 그들은 법정이나 법률 당국에 의해 그곳에 보내어지는 죄수들은 누구든지 수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은 직원들은 선택할 수가 있다. 직원들을 신중하게 선정하고 적절하게 교육하고 감독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도소의 업무는 힘든 것이다. 교도소에서는 자유를 박탈당한 남녀를 대해야 하는데 그들 중 다수는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거나 중독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사회적, 교육적 기술이 빈약하거나 사회의 주변 집단 출신인 경우가 많다. 그들 중에는 대중에게 위협적인 존재도 있을 것이고 위험하고 공격적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탈출하려고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교도소에 있기를 원하는 수용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 각자는 개별적 인간이다.

교도소 직원의 역할

교도소 직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수용자들을 예의 바르고 인도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쳐우한다.
- 모든 수용자들이 안전하도록 보장한다.
- 위험한 수용자들이 결코 탈출하지 못하도록 방비한다.
- 교도소 내에 질서를 유지하고 잘 관리한다.
- 수용자들이 석방될 때 사회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교도소에서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적 성실성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려면 뛰어난 기술과 개인적 성실성이 필요하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교도소에서 근무하려는 남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반드시 적절한 인간성과 교육적 배경을 지니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업무의 기본이 되는 원칙들과 필요한 인도적, 전문적 기술을 적절히 교육시켜야 한다. 그들의 업무 과정에서 항상 그들에게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와 교도소의 문제점들에 대한 최신 사고 방식에 발맞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고립의 위험성

교도소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폐쇄적이고 고립된 환경에서 근무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편협하고 융통성이 없는 성격으로 변할 수가 있다. 그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방식은 이러한 고립의 위험성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직원들은 넓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항상 민감해야 한다. 그들이 다른 수용자들이 그러한 사회로부터 왔고 그러한 사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교도소가 외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직원들이 교도소에 떨린 숙박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 점이 특히 중요하다.

교도소 직원의 지위

일반적으로 말해 교도소 직원들은 경찰처럼 형사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경시되고 있다. 이 사실은 교도소 직원들의 급료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수의 국가들에서 그들의 급료는 매우 낮은 편이다. 그 결과 교도소에서 근무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신규 채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고급 인력을 유치, 보유하기 위해서

는 급료가 적정 수준이 되어야 하고 기타 균무 상황이 비교 가능한 다른 공무 분야와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교도소에 대한 대중 교육

교도소, 교도소 직원, 또는 그들의 업무에 대해 일반 국민이 거의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보건 분야 종사자들과 교사들의 본질적 가치는 인정받는 데 반해 교도소 직원들은 그와 유사한 정도로 국민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각료들과 고위 교도소 관리자들은 대중 교육 프로그램의 수립을 검토해야 하고 교도소 직원들이 시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일반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대중 매체의 관심을唤起시켜야 한다.

가치와 의사전달

모든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이 사회의 기본적 가치들을 지지하고 보호한다. 이러한 가치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 것인든 모든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다. 인간성에 대한 이러한 존중을 시험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들 중 하나는 한 사회가 형사법을 위반했거나 또는 위반했다고 고발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들은 그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이나 권리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 준 사람들일 수도 있다. 교도소 직원들은 그들이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그 모든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데 있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지라도 모든 인간을 존중한다는 이 원칙은 예전에 그 자신 유명한 죄수였고 남아프리카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명백히 천명한 바 있다.

“자기 자신이 감옥에 투옥된 경험을 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어떤 국가를 진실로 알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어떤 국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그 국가의 가장 높은 지위의 시민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지위의 시민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는 점이어야 한다.”¹⁾

이것이 바로 교도소 관리를 그 무엇보다도 윤리적 틀 안에서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근거가 된다. 고위 행정관, 교도소 관리자, 제일선의 교도소 직원들은 이러한 의무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윤리적 배경이 없이 교도소 관리상의 능률만 강조하다가는 결국 나치의 강제 수용소나 구 소련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와 같은 만행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명백한 메시지

1) 만델라 N(1994), 자유에의 긴 여정, 런던 리틀 브라운 퍼

교도소의 운영을 담당한 사람들은 항상 이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려면 헌신적 노력이 필요하다. 제일선의 교도소 직원들은 이 조직의 책임자들로부터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명백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받을 때만 이러한 헌신적 노력을 계속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임무만을 수행하는 단순한 교도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사법 당국이 이미 가한 것보다 더 큰 처벌을 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경단원(自警團員)이 분명 아니다. 그들은 교육적, 교정적 역할과 보호적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뛰어난 개인적 재능과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다.

직원의 개인적 자질

교도소에서 근무하려면 특이하게 개인적 자질과 전문적 기술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도소 직원들에게는 다루기 어려운 수용자들과 위험한 수용자들을 비롯한 모든 수용자들을 공평하고 인도적이며 정당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개인적 자질이 필요하다. 이것은 엄격한 채용, 선정 과정을 거쳐 적절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만이 이 기관에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채용된 경우에만 교도소에서의 업무를 전문직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적절한 직원 채용의 위험성

많은 국가들에서는 교도소에서 일할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 결과 그곳에서 일하게 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 고용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직원들이 의무적 군복무를 수행하는 대신 교도소에서 근무하러 와서 할 수 있는 한 빨리 그곳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교육도 별로 받지 못하고 급료도 낮으므로 그들이 업무에 대한 전문적 자긍심이 거의 없고 부패한 관행에 가담하라는 유혹에도 약하며 보람 있는 공무를 수행한다는 의식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일관성 있는 전략

이러한 직원들에게 비전(vision)에 대한 의식이나 그들이 하는 일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신념을 불어넣는 일은 교도소 조직의 책임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되는 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우연히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이러한 작업은, 공적으로 존중되는 우수한 직원들이 우수한 교도소 조직의 열쇠라는 전제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전략이 수립된 경우에만 수행될 수가 있다.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10 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은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법집행관의 행동 규약 2 조

법집행관들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응호하고 지지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46조 2 항

교도소 운영자들은 직원들과 국민의 마음 속에 이 교도소 업무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봉사라는 확신을 일깨우고 지속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적절한 방법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48

교도소의 모든 직원들은 항상 모범을 보임으로써 수용자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그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게끔 행동하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실천 방법

목적에 대한 명확한 진술

직원들이 이러한 가치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교정 당국은 그 목적에 대한 진술을 명확히 공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진술은 국제적 문서들과 기준에 근거해야 하고 교도소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우간다 교정청의 정책 문서는 그러한 진술의 한 예를 보여준다. 이 문서에는 이 업무의 사명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공표되어 있고 이 업무의 토대가 되는 핵심적 가치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 가치들 중에는 직원의 채용과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의 근본적 중요성도 포함되어 있다.

**우간다 공화국
우간다 교정청**
**정책 문서
2000년 이후
사명의 선언**

종합 사법 조직의 일부인 우간다 교정청은 전 세계적으로 수용된 기준에 따라 범법자들을 합리적이고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인도적으로 보호 관리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범법자들이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써 교화되고 교정되어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써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가치

- 핵심적 가치로서의 정의
교정청은 형사 사법 조직 중 개인의 자유, 해방, 권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교정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업무의 모든 국면에서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다음의 것들에 대한 신념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법에 따른, 또 법 앞에서의 공정과 평등
 -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
 - 정직하고 개방적이고 성실한 관리
- 효과적 교정과 사법 제도의 근본이 되는 것은 범법자들이 그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이다.
- 범법자들 중 대다수는 수감형이 아닌 교정 프로그램에 의해 사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수감이라는 방법은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법자들에 대한 결정은 정보에 근거한 위험도 평가와 위험 관리에 근거해야 한다.
- 효과적 교정은 보다 정의롭고 인도적이며 안전한 사회의 조성을 기여하기 위해 형사 제도의 다른 담당자들과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일에 달려있다.
- 효과적 교정 제도에는 직원을 신중하게 채용하고 적절하게 교육시키며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 국민은 교도소에서 수행되는 일을 알 권리가 있고 형사 제도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 교정의 효과는 교정 제도가 어느 정도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 재유치된 수용자들은 무죄라고 가정해야 하므로 그들을 무죄한 사람들로 대우해야 한다. 그들을 유죄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과는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 남녀는 가능한 한 별도의 교도소에 수용해야 한다. 남녀 수용자를 다 받아들이는 기관에서는 여성용으로 할당된 건물과 부지 전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 수감은 항상 불법적 행동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국민과 대중 매체가 교도소가 어떤 가치에 따라 운영되는지를 인식하는 일도 중요하다. 시민 사회에서 교도소의 역할이 올바르게 이해된다면 국민은 교도소 당국이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도소의 고위 관리자들이 해당 지역의 주민과 대중 매체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이 잘못 될 때만 국민이 교도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국민은 교도소 생활의 일상적 현실에 대한 정보도 가져야 한다. 교도소 행정 당국은 교도소장들이 비정부 기구 등 시민 사회의 여러 단체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적절한 경우에는 그들을 교도소로 초청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가나에서는 교정청이 교도소의 업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일 주일 간의 특별 활동 기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정부 조직 내의 교도소

비군사적 기관

민간 업무

수감은 형사 사법 과정의 일부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간 정부가 임명한 독립된 판사들이 사람들을 교도소로 보낸다. 교도소 조직도 군사력보다는 민간 정부의 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 교도소의 운영도 군대나 다른 군사력이 직접 장악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교정 기관의 장이 현역 군인인 국가들이 많은데 그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대외(隊外) 근무를 명령받았거나 파견된 군인들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부는 이 사람이 민간인의 신분으로 교정 기관의 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비경찰 기관

임무의 분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경찰과 교도소 행정간에 기구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어떤 사람이 일단 구금되거나 체포되면 그 사람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법 당국 앞에 출두한 후 교도소의 보호 관리를 받도록 보내어져야 한다. 많은 국가들에서 경찰 행정은 내무부 관할이고 교정은 법무부 관할로 되어 있다. 이것은 권한의 분리를 보장하고 사법 당국과 교정 조직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긴밀한 연관을 강조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경찰·검찰의 역할과 사법 제도·교정 제도의 역할 사이에는 명백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

유럽 경찰 윤리 규약, 권장 사항 (2001) 10

유럽 위원회 각료 이사회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46 조 3 항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은 전문 교도관으로 전일제로 임명이 되어야 하며 훌륭한 행동, 능률, 체력 등만 있으면 재직권을 보장받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해야 한다.

실천 방법

민주적 관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교도 행정 기관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한 부가 관리하는 국가 기관이다. 브라질, 인도, 독일 등 몇몇 국가에서는 이 부는 주 정부, 즉 지방 정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교도소 조직은 국가적인 조직을 갖추고 중앙 정부의 한 부에 소속되어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에서는 위의 두 방식이 혼합되어 있다. 교정 기관을 관장하는 상급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점차로 법무부가 교정 기관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과 교도소의 분리 교도 행정 기관을 법무부 관할로 하는 것은 사법 과정과 시민의 구금간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경찰의 업무도 교정 기관의 업무와 분리된다. 수사 과정과 공판 전 구금이 분리되어 혐의자들이 강압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일이다.

임무의 이러한 이전을 관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몇몇 국가들에서는 경찰이 실질적으로 군대식으로 조직된 군사 조직으로서 경찰이 군대식 계급장을 달고 있고 경찰이 군사력으로 행동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것은 교도소 직원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가져야 한다는 요건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아프리카의 베냉,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차드, 니제르, 토고,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등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교정 기관이 내무부 소속에서 법무부 소속으로 이관되어 왔다.”

유럽 위원회는 이 위원회에 새로 가입하는 동유럽 국가들도 교정 기관을 내무부 관할에서 법무부 관할로 이관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책임을 이관한 결과 ①처럼 정부 부서 내에서 교정 기관에 대한 책임을 이관하는 것은 군인들이 급료와 그 밖의 고용 상황에서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국가들의 직원들에게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군인들과 그 가족의 건강관리비와 여행이 무료이고 주택과 휴가비도 보조되는 등 군인들이 특별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 장의 후반에 다루어질 예정이다.

사회 기관들과의 연계

교도소가 민간 기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실질적으로 모든 수용자들은 언젠가는 민간 사회에서의 생활로 돌아가게 된다. 그 때 그들이 법을 지키며 살 수 있으려면 그들에게는 살 곳, 고용의 기회, 적절한 사회적 지원 구조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정 기관이 사회 복지 기관이나 보건 기관 등 다른 공무 기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교정 기관 자체가 군 소속 기관이 아니라 민간 정부 소속 기관일 때 그러한 관계를 맺기가 더 쉽다.

기강이 있고 계층 조직적인 기관

그와 동시에 교도소 직원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교도소 자체는 대개 질서 정연하고 계층 조직적인 기관의 위치를 고수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교도소는 민주주의적 기관이 아니다.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히 인식된 명령 전달 체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대규모 기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잘 관리되고 있는 교도소에서도 항상 불안과 무질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교도소의 상황에서는 이것은 특히 그러하다. 교도소를 지위는 민간 정부 소속이지만 질서정연한 기관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 이 지침서의 5장에서 논의되겠지만 교도소가 질서 정연한 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직원과 수용자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교도소의 조직이 잘 통제되어 있어야 질서정연한 기관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이다.

직원 채용

높은 수준을 보장하기

적절한 직원의 중요성

모든 교도소 직원들, 특히 어떤 자격으로든지 수용자들을 직접 대할 직원들에게서는 높은 인격적, 전문적 수준을 기대해야 한다. 수용자들을 직접 대할 직원들 중에는 제복을 입은 제일선의 직원들, 즉 교도관들뿐만 아니라 교사나 강사 등 전문직 직원들도 포함된다. 수용자들과 매일 접촉할 직원들은 특히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원의 채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교정 기관은 적합한 개인들이 교도소에서 근무하기를 신청하도록 장려하는 명확한 정책을 펴야 한다. 교정 기관을 어떠한 가치관과 윤리적 배경 안에서 운영할 것인가를 이미 정립했다면 신규 채용 공고나 과정에서 그러한 요소들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그러한 업무에 지원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 행동과 태도를 취할 것이 기대되는가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또 이를테면 소수 민족이나 여성이나 외국인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개인적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교정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명확해질 것이다.

적절한 지원자를 선발하기

지원자들이 교도소 업무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적절한 지원자들만을 선발하여 교도소 조직 내에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이 절차들은 지원자들의 성실성과 인간성이나 그들이 일상 업무에서 마주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시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절차들 중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도소 직원의 필수적 조건인 자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원자들이 이러한 조건에 합당하다는 점이 입증되었을 때만 지원자들의 교육 수준, 신체적 능력, 전의 직장의 기록,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잠재력 등의 문제를 시험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차별 없는 선발

직원의 선발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서 일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동등한 급료를 받고 동등한 승진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용자들의 대다수가 남성이므로 전통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는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남성만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해야 할 이유는 없다. 수용자들의 상당수가 소수 인종 집단이나 소수 민족 집단 출신인 교도소들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교도소 당국은 수용자들과 유사한 배경을 가진 직원들을 충분한 비율로 채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46

- (1) 교도소 당국은 모든 등급의 직원들을 신중하게 선발해야 한다. 교도소가 적절히 운영되는 일은 직원들의 성실성, 인간성, 전문적 능력, 업무에 대한 개인적 적성 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 (3)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은 전문 교도관으로 전일제로 임명이 되어야 하며 훌륭한 행동, 능률, 체력 등만 있으면 재직권을 보장받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해야 한다. 급료는 적합한 남녀 직원을 끌어들이고 보유하기에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하며 업무가 힘들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고용 중의 각종 급부금은 혜택이 많고 업무 상황은 순조로운 것이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49

- (1) 교도소 직원들 중에는 가능한 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 복지사, 교사, 직업 교육 강사 등 충분한 수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사회 복지사, 교사, 직업 교육 강사 등은 상근직으로 확보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제 근무자나 자원 봉사자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법집행관의 행동 규약, 18조

정부와 법집행 기관들은 모든 법집행관들을 적절한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그들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도덕적, 심리적, 신체적 자질을 갖추게 하고 지속적이고 철저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그들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2조

당사국들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자체 없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데 동의하며 이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 (a) 자국의 헌법과 다른 적절한 법에 남녀평등의 원칙이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원칙을 명시하고 법과 다른 적절한 수단들을 통해 이 원칙을 실제적으로 실현할 것을 보장한다.
- (b)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법적 조치와 기타 조치들을 채택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제재 조치도 취한다.
- (c) 여성의 권리를 남성과 동등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확립하고 전국적 관할 법정과 기타 공공 기관들을 통해 여성에 대한 어떠한 차별 행위로부터도 여성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확실히 보호한다.
- (d) 여성에 대한 어떠한 차별 행위나 관행도 삼가고 공공 관청과 기관이 이러한 의무에 따라 행동하도록 한다.
- (e) 어떠한 사람이나 기관이나 기업도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한다.
- (f) 여성의 차별하는 내용을 가진 기존의 법, 규정, 관습, 관행 등을 수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입법 행위를 비롯한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한다.
- (g) 국가의 형사 규정 중 여성의 차별하는 내용의 모든 규정을 폐지한다.

실천 방법

적극적인 채용 정책

많은 교정 기관들은 높은 수준의 자질을 갖춘 직원들을 채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낮은 급료 수준 때문일 수도 있고 지역 사회에서 교정직에 대한 평판이 이 매우 낮기 때문일 수도 있다. 경찰 같은 다른 법집행 기관들과의 경쟁 때문일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교정 기관은 지원자가 자원해서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능동적인 채용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대중 교육 프로그램

능동적 채용 정책의 필요성은 이 장의 앞 부분에 설명된 바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대중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거짓된 가설들에 반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전반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특히 장래의 직원들의 관심도 일깨울 수도 있다. 시민 사회의 구성원들이 교도소 생활의 실상에 대해 무지하다면 그들 중 어떤 사람이 교도소 조직 내에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대중 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가 있다. 지역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에게 교도소를 방문하여 교도소가 어떠한 곳인지를

눈으로 직접 보도록 장려할 수도 있다. 대중 매체와 정기적으로 접촉하여 매체들이 상황이 잘못 되었을 때에만 비판적으로 보도하기보다는 광범위한 정보를 널리 알리도록 권장할 수도 있다.

그 다음 교정 기관은 교정 기관에 신규 직원을 공급할 수 있는 특정한 단체들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한 단체들이란 대학 같은 교육 기관일 수도 있고 사회 단체들일 수도 있다. 이러한 단체들에게 교도소 직원의 역할이라든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좋아할 것인가, 또는 이것은 가치 있는 공무(公務)라는 사실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문 직원 전문 직원의 채용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전문 직원이란 이미 특정 전문직의 교육을 받은 개인들을 말한다. 이러한 직원들로는 교사, 강사, 건강 관리 요원 등이 있다.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를 필요로 하는 교도소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교사처럼 전문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교도소에서 근무하기에 적합할 것이라고 미리 가정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전문직 직원들도 신중하게 선발되어야 하며 그들이 이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기대되는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여성 교도관 여러 국가들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여성도 남성만큼 교도관의 일반적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 있다. 사실 교도관과 수용자들이 대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성 교도관의 존재는 폭발적 사건으로 진전될 수도 있는 상황의 긴장을 완화해 줄 수도 있다. 또 공중 화장실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신체 수색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수용자들과 동성(同性)이어야만 하는 상황들도 있다. 이러한 상황들 외에도 여성 교도관은 어떠한 임무에도 배정될 수가 있다.

직원 교육

제111 제111 적합한 직원을 일단 선발해서 채용한 후에는 적절한 교육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신규 직원들은 교도소 안의 세계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장의 앞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어떠한 윤리적 맥락에서 교도소가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그들 모두의 이해를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교도소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과 인간성에 대한 신념이 그 후에 가르칠 모든 전문적 기술의 토대를 이루어야 한다. 교도소와 관련된 사람들은 모든 수용자들, 모든 직원들, 모든 접견자들이 포함된다. 수용자들이 누구이든, 어떤 죄목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건 관계없이 수용자들이 모두 포함된다. 직원들은 다루기가 매우 곤란하거나 힘든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예의 바르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데 필요한 기본적 기술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단지 이론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받아야 할 전문적 교육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첫 단계이다. 때때로 가장 발달된 교도소 조직에서도 무엇 때문에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지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훌륭한 교도소 업무의 기본이 되는 주요한 특징들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전문적 교육

그 다음에 직원들은 필요한 전문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보안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여기에는 열쇠, 자물쇠, 감시 장비 등 보안 장치의 이용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포함된다. 그들은 적절하게 기록을 하는 방법과 어떤 종류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수용자들을 직접 다루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자물쇠와 열쇠를 통한 보안을, 그들이 다루는 수용자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보안이 보완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지침서의 5장에 언급된 역동적 보안의 문제이다.

무질서의 예방

질서를 유지하는 문제에 관한 한 신규 채용된 교도소 직원들은 무질서가 발생한 뒤 그것을 수습하는 것보다 무질서를 예방하는 것이 항상 더 낫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무질서는 한 명의 수용자만 관계된 사건에서부터 집단 반란과 폭동에 이르기까지를 다 포함하는 표현이다. 무질서가 저절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개의 경우 말썽의 발생을 경고하는 많은 조짐들이 있게 마련이다. 적절한 교육을 받은 직원은 이 경고의 조짐들을 알아차리고 팔썽을 완화하려는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것은 직원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기술이다.

기속적인 교육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은 맨 처음 신규 채용되는 순간부터 마지막으로 퇴직하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모든 연령과 계급의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일련의 정기적 기회들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최신 기술들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그렇게 하면 전문 영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특정 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와 고위 직원들에게 그들의 관리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47

- (1) 교도소 직원들은 적절한 교육 수준과 지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2) 직원들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 그들에게 전반적 임무와 특수 임무에 대한 교육 과정을 제공해야 하며 그들은 이론 시험과 실기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3) 근무를 시작한 후와 근무 기간 중 직원들은 적절한 간격을 두고 제공되는 연수 교육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지식과 전문적 능력을 유지, 향상시켜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50

- (1) 교도소장은 그 인격, 행정 능력, 적절한 교육, 경험 등의 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 (2) 그는 자신의 모든 시간을 그의 공적 임무에 바쳐야 하며 시간제로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 (3) 그는 교도소 올티리 내에서 거주하거나 바로 옆의 주거지에서 거주해야 한다.
- (4) 두 개나 그 이상의 교도소들이 한 사람의 소장의 관할 아래 있는 경우에는 소장은 이 교도소들을 찾은 간격으로 방문해야 하고 교도소마다 그곳에 거주하는 관리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51

- (1) 교도소의 소장, 부소장, 다른 직원들 대다수는 가장 많은 수의 수용자들이 말하는 언어나 가장 많은 수의 수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2) 필요한 경우에는 항상 통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52

- (1) 한 명이나 그 이상의 전임 의무관(醫務官)이 근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큰 교도소에서는 의무관들 중 적어도 한 명은 교도소 올티리 내에서 거주하거나 바로 옆의 주거지에서 거주해야 한다.
- (2) 그 밖의 교도소들은 의무관이 매일 방문해야 하고 응급 상황에 지체 없이 환자를 돌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거주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53

- (1) 남녀 수용자들이 함께 수용된 교도소에서는 여성 전용으로 구분된 구역은 책임 있는 여교도관이 관장하고 그 구역의 모든 열쇠를 관리해야 한다.
- (2) 여성 전용으로 구분된 구역에는 여교도관과 동행하지 않는 한 어떠한 남자 직원도 들어갈 수 없다.
- (3) 여교도관만이 여수용자와 동행하며 감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자 직원들, 특히 의사나 교사가 여성 전용 교도소나 교도소의 여성 전용 구역에서 전문적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54

- (1) 교도관들은 수용자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방어를 위한 경우나 탈출 시도 사건의 경우, 또는 법이나 규정에 근거한 명령에 대한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인 신체적 저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힘을 사용하는 교도관은 엄격히 필요한 정도 이상의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소장에게 그 사건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 (2)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용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무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직원들이 무기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무기가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법집행관의 행동 규약, 3조

법집행관들은 엄격히 필요한 경우에만, 또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도만큼 힘을 사용할 수 있다.

법집행관의 행동 규약, 4조

법집행관들이 소지한 기밀성 자료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나 사법적 필요성에 따라 엄중히 요구되지 않는 한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법집행관의 행동 규약, 5조

어떠한 법집행관도 어떠한 고문 행위나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가하거나 선동하거나 관용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법집행관도 고문이나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상급 명령이나 전쟁 상태, 전쟁의 위협,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국내의 불안정한 정세, 또는 그 밖의 공적인 긴급 사태 등의 예외적인 상황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법집행관의 행동 규약, 6조

법집행관들은 그들이 보호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충실히 보호할 것을 약속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그들이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

법집행관의 행동 규약, 7조

법집행관들은 법과 본 규약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할 수 있는 한 법과 본 규약의 위반을 방지하거나 단호하게 저지해야 한다.

법집행관의 무력과 화기 사용에 대한 기본 원칙, 원칙 4

법집행관들은 임무를 수행할 때 무력과 화기를 사용하기에 앞서 가능한 한 비폭력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들은 다른 방법들이 비효과적이거나 의도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무력과 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법집행관들은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수반하는 특별히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또는 그러한 위험을 야기하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또는 그러한 사람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죽음이나 중상의 임박한 위협에 대항하여 자기 방어나 다른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에 대해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화기보다 덜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화기를 의도적이고 치명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불가피한 경우에만 있어야 한다.

법집행관들은 수감 중이거나 구금 중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당 기관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에 엄격히 필요하거나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집행관들은 수감 중이거나 구금 중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죽음이나 중상의 즉각적 위협에 대항해서 자기 방어나 다른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한 경우나 원칙 9에서 언급된 위험을 야기하는 수용자나 구금자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에 대해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수용자들과 피구금자들의 진료를 담당하는 건강관리 요원, 특히 의사들은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의 질병을, 수감되거나 구금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질과 수준으로 치료해 주어야 할 임무를 지니고 있다.

1. 기혼, 미혼의 여성들에게 경제 생활과 사회 생활의 영역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다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a) 기혼 여부나 다른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직업 교육을 받고 근무하며 직업과 직장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전문적, 직업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
 - (b) 남성과 동등한 보수를 받고 동등한 가치의 업무에 관해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 (c) 유급 휴가와 퇴직 시의 혜택을 받을 권리와 실업, 질병, 노령이나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보장을 받을 권리
 - (d)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가족 수당을 받을 권리
2. 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한 여성 차별을 방지하고 여성의 실질적 취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결혼이나 출산 시 여성의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전의 근무지로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과 함께 유급 출산 휴기를 제공하고 턱아 시설 등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교정 기관은 모든 급수와 형태의 직원들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채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구금 시설의 적절한 관리는 그 직원들의 성실성, 인간성, 능력, 청소년을 다루는 전문적 능력, 업무에 대한 개인적 적성 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직원들에게는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 심리학, 아동 복지, 국제 기준, 인권 기준, 아동의 권리, 본 규정 등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1. 소년 사건을 다루는 모든 직원들에게 필요한 전문적 능력을 습득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 전문적 교육, 연수 교육, 재교육 과정 등과 그 밖의 적절한 교육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2. 소년 사법에 종사하는 직원들에는 소년 사법 기관과 접촉하는 소년들의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소년 사법 기관에서는 여성과 소수 민족을 대표하는 직원들을 공정한 비율로 배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실천 방법

초기 교육

교도소의 신입 직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수준과 기간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가장 기본적 교육 방법은 신입 직원이 순전히 경험 많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배우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들은 보안을 위한 한 다발의 열쇠를 받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조언을 받을 뿐이고 그 다음에는 임무를 알아서 잘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관행이다. 그렇게 되면 기껏해야 신입 직원은 자신들의 업무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최선의 관행을 대표하지 않는 고참 직원들의 습관을 베울 뿐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신입 직원은 강력한 수용자들이 가하는 압력에 영향을 받기 쉽게 될 것이다. 강력한 수용자는 그들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안전과 질서를 약화시킬 것이다.

어떤 국가들에서는 신입 직원들을 몇 주 동안 훈련소나 연수원에 보내서 교도소에서 임무를 시작하기 전 기초적인 업무를 배우게 한다. 또 어떤 국가들에서는 제일선의 직원들은 자격을 갖춘 교도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 최고 2년 동안의 교육을 받기도 한다. 여러 국가들의 교정 제도에서는 신입 직원들이 이론 교육과 실용 교육을 혼합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가나에서는 신입 직원들은 먼저 훈련소에서 3개월 동안 연수를 받고 그 다음에는 교도소에서 3개월, 또 그 다음에는 훈련소에서 3개월 동안 연수를 받게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교도소의 모든 신입 직원들은 실제로 교도소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일련의 원칙들과 그들의 기본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들은 경험 많은 직원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 교도소의 관리자들은 신입 직원들에게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고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 넣어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험 많은 직원들로 하여금 신입 직원들과 함께 일하게 해야 한다.

고위 직원의 교육

교도소의 고위 직원들에게는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은 고위 직원들이 신규 채용될 때 고위직으로 바로 채용이 되었건 아니면 하급 직원에서 점차 승진했건 마찬가지이다. 경험만이 높은 직급의 교도소 관리자의 자질을 갖추게 해준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교도소에서 하급직으로 여러 해 동안 근무해 온 직원들이라도 관리직을 맡기 전에는 부가적인 기술들을 익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러시아 등 몇몇 국가들에서는 직원들을 바로 고위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교도소의 관리직급에서 근무하기 전에 몇 년이 걸리는 학위 과정을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도소장과 부소장은 해당 교도소의 문화와 기풍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인격적 자질에 따라 특히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하고 광범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직 직원, 특히 의료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교사나 강사처럼 전문적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그들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의료 담당 직원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하다. 의사들은 교도소에서 근무하려 올 때 의사의 윤리적 책임감을 온전히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라도 의사의 일차적 임무는 신체적 질병이건 정신적 질병이건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이다. 이 점은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의사들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주(州)의 교정 보건청은 교정 조직과는 분리된 기관이지만 뉴 사우스 웨일즈의 교도소들에게 모든 수용자들에게 보건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교정 조직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 기관은 1999년 직원들을 위한 행동 윤리 규약을 제정했다.

특수 수용자 집단을 다루기 위한 교육

특수 수용자 집단을 다루게 될 직원들은 그들을 다루는 데 필요한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년 수용자들이나 그보다 더 어린 수용자들을 다루게 될 직원들에게는 특히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종류의 업무가 성인 수용자를 다루는 업무보다 덜 중요하거나 덜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다. 소년 수용자들은 성인 수용자들보다 더 격하기 쉽고 다루기 힘든 경우가 많다. 반면 이들은 적절한 교육과 격려에 능동적으로 반응할 가능성도 더 크다. 소년 수용자들을 다루는 직원들의 주요한 임무들 중 하나는 그들이 합법적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돋는 것이다. 여성 수용자, 정신 장애 수용자,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수용자 등을 다루는 직원들을 교육할 때에도 그와 유사한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발전과 지속적 교육

직원들이 받는 초기의 교육은 그들의 발전 과정의 시작일 뿐이다. 교도소는 팽창되는 지식과 외부적 영향력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역동적인 기관이다. 직원들은 그들의 지식을 첨단화하고 기술을 연마할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교정 기관 내의 발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 재판 기관과 사회 복지 기관의 발전도 필요하다. 이러한 발전은 한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내내 지속되어야 한다.

무력 사용에 대한 교육

대부분의 교도소들에서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수용자들은 합법적인 명령에 순응할 것이다. 그들은 교도소에 있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시 받은 대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때때로 개인이나 소집단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무력을 사용해서 제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는 이 지침서의 5장에 다루어져 있다. 모든 직원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 수용자들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들을 미리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무력의 사용에 관한 절차

첫 번째 원칙은 무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필요한 정도만큼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과 그 무력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련의 명확한 절차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어떤 종류의 무력이든 무력을 사용하려는 결정은 그 때 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 중 최고위자가 내려야 한다. 무력이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한 기록도 해야 한다.

무력 사용의 최소화

모든 직원들은 개별적이거나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수용자들을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해서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합법적인 방법들을 교육받아야 한다. 선정된 직원들에게 높

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영국의 교정 기관이 사용하는 제압과 저지를 위한 교육 방법은 무력의 사용이 최소화된 한 예를 보여준다.

화기 사용 교육

어떤 교정 기관에서는 화기를 소지한 직원들이 많다. 이 직원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그들이 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용자들을 직접 다루는 직원들이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권장되는 관행이 아니다. 그것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화기를 결코 성급히 사용하지 않게 하고 화기가 수용자들의 수중에 결코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생명의 존실을 방지하기 위해 만 사용

치명적 화기는 생명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즉각적이고 명백하게 감지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치명적 화기는 다만 어떤 수용자가 탈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치명적 화기의 사용은 그러한 탈출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이 즉각적으로 위협받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직원 채용의 조건

좋은 조건의 필요성

01 지침서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교도소를 잘 운영하기 위한 원칙들이 실천되려면 교도의 교육을 받고 그들이 수행하는 공무에 헌신하려는 동기 유발이 잘된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장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유능한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들에게 전문적 직업 의식을 불어넣고 그들을 높은 수준으로 교육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이 적절한 수준의 급료를 받지 못하고 적절한 고용 조건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교도소 조직에서 계속 근무할 가능성은 낮다. 그 대신 그들은 이미 받은 교육을 이용해서 고용 조건이 더 나은 다른 직장으로 옮겨 이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점은 구 소련에 속했던 국가들의 많은 교정 기관들에서 심각한 문제로 되었다. 이 국가들은 아직도 신입 직원들, 특히 고위직 직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들이 이 기관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한 후에 이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급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급료 수준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어떤 직업의 위상은 대체로 그 급료에 의해 평가된다. 최고 수준의 개인이 급료 수준이 매우 낮은 직장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은 없다. 교정 업무는 가장 복잡한 공무들 중 하나이다. 이 사실이 모든 직급의 교정 기관 직원들에게 지불되는 급료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교정직과 비교할 수 있는 집단들이 많다. 어떤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비교 집단들은 경찰 같은 다른 형사 사법 기관들일 수도 있다. 또 어떤 국가들의 경우에는 비교 집단이 교사나 간호사 같은 공무원일 수도 있다. 어떤 비교 집단이 이용되든지 간에 정부는 교도소 직원들도 그들이 수행하는 어렵고 위험한 업무에 대해 적절한 급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국가들에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사항은 직원들이 적절한 수준의 급료를 받지 못하면 그들

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부패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 밖의 고용 조건

많은 국가들의 경우 교도소는 인구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매우 고립된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자녀의 학교 문제, 의료 시설, 상가, 그 밖의 사회 활동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 밖의 고용 조건들, 특히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용 조건들은 급료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교도소가 외딴 곳에 위치하고 있다거나 해당 지역에서 주거를 얻는 비용이 높다거나 아니면 모든 공무원들에게 주거가 제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직원들이 무료로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주택 보조금을 제공받는 경우들도 있다. 그와 유사한 이유들로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교도소의 의료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기도 한다. 유럽 이사회가 새로 가입하는 국가들에게 교정 기관을 관리하는 권한을 내무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교정 조직의 책임 소재의 면에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궁정적인 발전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내무부 관리의 자격으로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이 무료 건강관리, 교육, 주택 등을 제공받고 보조금을 받거나 무료로 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휴가를 보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혜택은 낮은 급료 수준을 보완해 주었다. 업무가 법무부로 이전되면 이러한 혜택의 대부분이 사라지므로 직원들은 가족을 중간 정도로라도 부양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는 방법은 직원들에게 합당한 급료를 지불해서 그러한 혜택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 재원이 빈약한 국가들에서는 이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교도소 사회보다 지역 사회에게 거주하는 것을 선호

직원과 그 가족이 교도소 직원들로만 구성된 사회에서보다는 일반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업무에서 벗어난 다른 취미를 가지거나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더 쉬워질 것이다. 또 직원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교도소 밖의 정상적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보다 충실했던 생활 양식을 즐기게 되면 직원들은 근무하는 동안에 더 헌신적으로 일할 수가 있게 된다.

동등한 대우

01 지침서의 16장은 어떤 종류의 소수집단에 속하는 수용자든 그들을 결코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 조건을 다루고 있다. 이 장의 앞부분에서 지적했듯이 그와 동일한 원칙이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 여직원들도 남자 동료들과 동등한 급료와 근무 조건을 부여 받아야 한다. 그들은 동등한 승진 기회와 특수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일할 동등한 기회도 제공받아야 한다. 이와 동일한 원칙은 소수집단, 즉 소수 민족이건 소수 종교 건 소수 문화건 소수의 성적 선호성이건 모든 종류의 소수집단에 속하는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

전근

어떤 교정 조직에서는 직원이 다른 교도소로 전근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직원들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필요도 참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직원의 자녀들이 교육 기간 중 특히 예민한 시기에 있을 때에는 전근은 자녀의 교

3 수용자들은 인간이다

육에 매우 유해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드문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근을 시킬 경우에는 항상 직원들 자신과 의논을 해야 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그들에게 그러한 제의에 동의하기를 요청해야 한다. 전근은 결코 어떤 직원에 대한 어떤 형태의 징계 조치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직원 대표 기관

대부분의 교정 조직은 질서정연한 기관이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을 비합리적으로 대우하거나 그들의 지위에 대한 존중이 없이 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직원은 급료 수준과 고용 조건에 대해 그들을 대신해서 교정 당국과 협상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속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권장되어야 한다. 공식적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들은 적어도 공인된 협상 기구를 가져야 한다. 노동조합이나 다른 직원 대표들은 동료 직원들을 대표해 수행하는 업무 때문에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체제

인간의 존엄성

수용자는 인권에 따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들이 아무리 중대한 범죄로 고소되거나 선고받았다 해도 그들은 그래도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다. 그들의 사건을 다룬 법정이나 다른 사법 기관은 그들의 자유를 박탈해야 한다고 선고한 것이지 그들의 인간성을 박탈해야 한다고 선고한 것은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수용자

교도소 직원은 수용자들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수용자를 전인적 인격체로서보다는 하나의 숫자로서 생각하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물리쳐야 한다. 또 교도소 직원은 수용자들이 어떤 행위를 저질렀다든가 어떤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상실한 하등의 인간으로 그들을 대함으로써 그들에게 더 이상의 처벌을 가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 수용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법적으로 항상 잘못된 행위이다. 또 그러한 행동은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직원 자신의 인간성을 비하시키는 것이다. 교정 기관과 교도소 직원이 항상 윤리적 맥락 안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은 이 지침서의 2장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이 장에서는 이것의 실제적 결과를 다룰 예정이다.

고문이나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에 대한 전적인 금지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들도, 자유를 박탈당한 일의 명확한 결과로서 상실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교도소 당국과 교도소 직원들은 이 원칙이 암시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몇 가지 문제들은 매우 명확하다. 예를 들면 고문이나 고의로 가해진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는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금지가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금지는 수용자들이 처해진 총체적 상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유럽 인권 법원은 러시아의 한 단기 수용소에서 4년 10개월 동안 한 수용자가 수감되어 있었던 상황이 유럽 인권 협정 제3조에 위반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유럽 인권 협약 제3조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 소송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마가단에 수감되어 있었던 발레리 칼라시니코프가 제기한 것이었다.

이 법원은 마가단의 단기 수용소 내에 있는, 칼라시니코프가 수감되어 있었던 감방에서는 수용자 일인당 면적이 0.9~1.9평방미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수용자의 극심한 고통 현상 때문에 그들은 잠도 차례대로 자야만 했다. 이 감방에는 전등이 항상 켜져 있었고 수용자들이 많아 항상 시끄러웠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수면 부족

현상이 초래되었다. 이 법원은 또 적절한 환기 장치의 결여, 수용자들이 감방에서 흡연을 하도록 허용이 되었다는 사실, 감방에 해충들이 만연했다는 사실, 감방과 화장실 구역의 불결한 상태, 사생활의 결여, 발레리 칼라시니코프가 피부병과 균상증에 감염되었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 법원은 칼라시니코프가 매독과 결핵에 감염된 사람들과 같은 감방에 수감된 시기도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원은 2002년에 내린 판결문에서 최근 마가단 단기 수용소의 상황이 상당히 호전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으며 러시아 당국이 칼라시니코프에게 굴욕을 주거나 그의 인간성을 비하시키려는 실질적 의도는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유럽 인권 법원은 그리스의 한 교도소에서 한 수용자가 적어도 두 달 동안 수감되어 있었던 상황이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금지하는 유럽 인권 협정 제3조를 위반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도널드 피어즈가 제기한 것으로서 그는 1994년 체포된 후 미결수로 그리스의 코리달로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이 법원은 코리달로스가 하루 24시간 중 상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감방의 침대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했다. 이 감방에는 환기 장치나 창문이 없어 참을 수 없이 무더워지는 때도 있었다. 그는 또 다른 수용자 앞에서 변기를 사용해야 했으며 감방 동료가 변기를 사용하는 동안 그 앞에 있어야 했다. 이 법원은 이러한 상황이 피어즈의 인간적 존엄성을 손상시키고 그로 하여금 고통과 열등감을 느끼게 했으며 이러한 감정은 그에게 굴욕을 주고 인격을 손상시키는 동시에 그의 신체적, 도덕적 저항력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법원은 교도소 당국이 피어즈에게 굴욕을 주거나 그의 인격을 손상시키려는 능동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의견이었지만 당국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수용 상황을 개선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어즈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나타낸다는 평결을 내렸다.

어떤 권리를 상실했는가?

자유를 박탈당한 결과로서 어떤 권리가 상실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수용의 본질상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세계 인권 선언 13조)와 자유로운 교제의 권리(동 선언 20조)가 제한을 받는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수용자들이 완전히 격리되는 경우는 드물고 그런 경우라도 매우 타당하고 특수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들도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 접견권(동 선언 12조)도 상실하지는 않지만 그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면 교도소의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와 무제한적으로 접촉할 수 없고 자녀도 아버지와 무제한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동 선언 16조)은 각 국의 사법권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권리이다. 어떤 국가들에서는 수용자들이 동반자나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떤 국가들에서는 그들이 매우 제한된 상황 아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 어떤 국가들에서는 그들이 특정한 기간 동

안 실질적으로 정상적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 지침서의 8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 모자(母子)가 가정 생활을 누릴 권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몇몇 중요한 문제들은 이 지침서의 12장과 13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 자국의 정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자유 의사로 선택한 대표를 통해 참여할 모든 사람들의 권리(동 선언 21조)도 수감 중에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25조는 이 권리의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떤 국가들에서는 아직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수용자들은 투표를 할 자격이 있다. 어떤 국가들에서는 모든 수용자들이 투표를 할 수가 있다. 또 어떤 국가들에서는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선거에서 투표하도록 허용이 되지 않으며 형기(刑期)를 이미 마치고 교도소를 떠난 사람의 경우에도 투표가 금지되는 수가 있다.

수용자와 교도관은 같은 인간이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남성, 여성, 아동 등도 인간이다. 그들의 인간성은 그들이 수용자들이라는 사실을 훨씬 초월한다. 마찬가지로 교도관들도 인간이다. 이 두 집단이 그들의 공통의 인간성을 어느 정도만큼 인정하고 준수하는가가 한 교도소의 예의와 인도적 대우의 정도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그러한 인정이 결여된 경우에는 인권이 무시될 실질적 위험이 존재한다.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시민·정치권에 대한 국제 규약, 10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을 인도적으로,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원칙, 원칙 1

모든 수용자들을 인간으로서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를 맹땅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구금이나 수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원칙, 원칙 1

어떤 형태로든 구금되거나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인도적인 태도로,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우해야 한다.

인권과 민족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현장, 5조

모든 개인은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을 존중받고 자신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미주 인권 협정, 5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을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실천 방법

인권을 보호하면 교도소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된다

수용자들에 대한 직원들의 예의바른 행동이 이 지침서에서 강조하는 요점이다. 직원들이 수용자를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개별적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직원의 행동과 수용자들에 대한 인도적이고 품위 있는 대우가 교도소의 모든 운영 활동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인권 원칙의 문제만은 아니다. 교도소 운영의 면에서도 이것은 교도소를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인권을 존중할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인권에 대한 무시가 될 뿐만 아니라 교도소 운영상 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1994년 11월 27일, 같은 해 잠정적으로 정신 분열증의 진단을 받았던 크리스토퍼 에드워즈는 거리에서 젊은 여성에 접근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그는 잉글랜드 첼름스퍼드 교도소에 미결수로 구치되었다. 그 다음 날 그는 폭력 소동과 공격의 전과를 가진 또 하나의 청년과 같은 감방에 구치되었다. 11월 29일 오전 1시 직전에 교도소 직원은 크리스토퍼가 감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같은 방 동료에게 짓밟히고 발로 차여 사망한 것이었다. 이 청년은 또 그 후 한정 책임 능력(정신 장애 따위로 올바른 분별력이 현저히 감퇴한 상태로 감형의 대상이 됨) 때문에 고살(故殺, 살의 없는 살인)을 저질렀다는 판결을 받았다.

크리스토퍼 에드워즈의 부모는 이 사건을 유럽 인권 법정에 제소했다. 2002년에 내려진 판결에서 법정은 크리스토퍼 에드워즈가 사망한 상황에 대해 2조(생명을 유지할 권리)가 위반된 결과라는 평결을 내렸다. 그의 사망 경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점도 2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고 그의 부모가 교도소 당국이 그들의 아들의 생명을 유지할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그들의 주장을 판정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점은 13조(효과적인 배상을 받을 권리)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평결을 내렸다.

최저 기준 규칙

이러한 접근 방법이 실용적 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는 수용자 처우에 대한 UN의 최저 기준 규칙(SMRs)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1957년 UN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이 규칙은 이 지침서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 이 SMRs는 교도소의 일상 생활의 기본적 특징들을 다루고 있다. SMRs의 본문은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에서 몇 가지 국면은 타협의 여지가 없고 법적인 책임을 초래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 세계 도처에는 다양한 법적,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상황들이 통용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이 문서는 이 최소 기준 규칙이 “실제 난관을 극복하려는 항구적인 노력을 고무하고” 이 규칙에 표명된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는 한도 내에서 실험을 장려하려는 의도로 계획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SMRs 전문 2항과 3항)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고문과 학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문은 정당화될 수 없다

국제 인권 문서들은 고문과 학대에 대해 어떠한 의문점이나 불확실성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는다. 이 문서들은 고문이나 그 밖의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는 어떠한 상황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 고문은, 구금되거나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이나 고통 이외의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가혹한 통증이나 고통을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가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된다.

고문에 의해 자백을 받아내는 일은 금지되어 있다

고문을 금지하는 것은 심문이나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형사 사건의 해결에 필수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이 당연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의 가장 명확한 예로 어떤 수용자가 수사 도중 당한 학대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된 사람을 구금하는 기관을 분리하자는 주장의 주요한 논거가 된다.

학대를 결코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교도소의 성격은 밀폐되고 고립되어 있으므로 학대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이러한 학대 행위는 때로는 조직적 방식으로, 때로는 개별적 직원의 행동에 의해 저질러질 수가 있다. 교도소의 행형(行刑) 기능을 우선하는 국가나 기관에서는 힘을 일상적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든가 때린다든가 하는 등 고문이나 학대에 해당하는 행동을 직원들이 ‘정상적’ 행동이라고 간주하게 될 수도 있다.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세계 인권 선언, 5조

그 누구도 고문을 받거나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1조 1항

… “고문”이라는 용어는 어떤 사람이나 제삼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거나 그나 제삼자가 저질렀거나 아니면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행위에 대해 그를 벌하거나 아니면 그나 제삼자를 위협하거나 억압하려는 목적이나 아니면 그 어떤 종류의 차별적인 이유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가혹한 통증이나 고통을, 공무원이나 공적인 자격으로 행동하는 다른 사람이 가하거나 그러한 사람의 교사에 의해 가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사람의 동의나 묵인아래 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가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합법적인 형벌에 기인하거나 그러한 형벌에 내재하거나 부수되는 통증이나 고통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2조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아래 있는 어떤 영토에서든 고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조치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전쟁 상황이든 전쟁의 위협이든 국내 정세의 불안정성이든 어떤 다른 공적인 긴급 사태든 고문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

3. 상급 관리나 공공 기관의 명령이 고문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

고문 및 그 밖의 잔虐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10조

각 당사국은 고문 금지에 관한 교육과 정보를, 민간과 군의 법집행관, 건강 관리 요원, 공무원, 그밖에 어떤 형태로든 체포, 구금, 수감 중인 개인의 구금, 심문, 처우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과정에 충실히 포함시켜야 한다.

법집행관의 행동 규약, 3조

법집행관은 엄격히 필요한 경우에만, 또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도로만 힘을 사용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구금이나 수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원칙, 원칙 34

구금되거나 수감되어 있던 사람이 복역이나 수감 도중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사망이나 실종의 원인에 대한 수사가, 해당 기관 자체의 제의에 의해서나 그 사람의 가족의 의뢰나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의뢰에 따라 사법 당국이나 다른 당국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실천 방법

직원에게는 고문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해주어야 한다

교도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모든 관계 당국들은 교도소와 관련된 모든 직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고문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고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가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학대의 위험이 발생하는 순간

관계 당국은 교도소의 어떤 운영 규정도 직원이 수용자에게 그러한 처우를 가해도 좋다는 허락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것은 다루기 힘들거나 방해가 되는 수용자들이나 독방에 격리되어 있는 수용자들을 다루는 데 관한 규정들을 해석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다. 직원들이 수용자들을 앞으로 어떤 분위기로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을 인식하게 되는 주요한 순간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수용자가 처음 교도소에 들어올 때 발생한다. 그가 그 순간에 받는 대우는 그 수용자와 뒤따라올 수용자들에게 중요한 지표가 된다. 교도소에 처음 들어올 때 어떤 사람들은 풀이 죽고 두려워 한다. 어떤 사람들은 공격적이거나 마약이나 술에 취해 있다. 직원들이 모든 수용자들이

들어올 때 품위 있고 존중하는 태도로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중요한 규정들은 교도소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다루기가 힘든 수용자들을 다루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잔인하거나 물인정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확고하고 결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성적 학대

수용자들은 성적 학대에 취약하다. 이것은 폭력에 의해서나 강압에 의해서나 아니면 특권에 대한 교환 조건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가해자가 직원인 경우도 있지만 다른 수용자인 경우가 더 흔하다. 직원이 수용자들에 의한 성적 학대를 일종의 처벌이나 통제 수단으로 보아 관용하는 경우도 많다. 여러 국가들에서는 교도소 내의 성폭행이 만연되어 있고 그것은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다. 성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손상 외에도 그 것은 HIV 양성 반응자나 AIDS나 그 밖의 질병들을 확산시킨다. 교정 당국은 수용자들, 특히 여성들이 성적 학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줄 책임이 있다.

미 연방 대법원은 “교도소에서 폭력적 공격을 받는 것은 범죄자들이 사회에 대한 그들의 범죄의 대가로 받는 처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 결과 교도소 내의 성폭행을 예방하고 처벌할 뿐만 아니라 성폭행 빈도가 높은 교도소들을 확인하려고 노력한다는 내용의 법안(2002년의 교도소 성폭행 예방법)이 현재 상원에 상정되어 있다.

무력의 사용을 규제

수용자의 행동이 고문이나 학대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무력을 사용해야 할 때는 합의된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그 때에도 수용자를 규제하는 데 꼭 필요한 정도만큼만 사용해야 한다. 수갑, 신체 벨트, 사슬, 지팡이, 곤봉 등의 억제 수단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물리적 힘의 사용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어야 한다. 직원들이라고 해서 수갑, 신체 벨트, 구속복 등을 무제한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그러한 것들을 교도소의 중심부에 보관하고 그것들을 사용하려면 고위 직원의 허가를 미리 받게 해야 한다. 이러한 장비가 언제 지급되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충실히 기록도 해두어야 한다.

곤봉의 사용

많은 국가들에서는 개별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곤봉을 지급 받고 있다. 이 곤봉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명확한 지시가 내려져야 한다. 곤봉의 사용은 개인의 방어에 관계될 경우에 한하여 어떤 형태로든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직원들이 일상적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곤봉을 공공연하게 손에 쥐고 다녀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와 이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은 보안과 질서를 다룰 5장에서 더 충실히 논의될 것이다.

무력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방법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난폭한 수용자들을 통제하는 다양한 기술이 있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면 직원이나 수용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감소된다. 직원들에게 이러한 기술을 훈련시켜야 하고 이러한 훈련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최신 기술을 습득시켜야 한다. 폭력 사고가 일어나거나 어떤 수용자를 제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나 가급적 빨리 고위 직원이 현장에 나가 지켜보아야 하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고문과 학대에 대한 고소

수용자들이 고문, 또는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에 대해 반소(反訴)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독립적 기관에 고소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개방된 일련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 지침서의 9장에 수용자들의 고소권이 다루어져 있다.

독립적 감시자의 역할

고문, 또는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판사나 다른 독립적 감시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독립적 감시의 필요성은 이 지침서의 10장에 다루어져 있다.

입소 절차

입소 시점은 취약한 시점

피구금자들이나 수용자들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처음 도착할 때는 그들이 특히 취약한 시점이다. 국제법에서는, 생명권과 고문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명시함에 있어 이 시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체제가 필요하다는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여러 국제 문서들은 구금 장소에 처음 입소하는 시점에서 고문, 학대, 실종, 법정 외의 살인, 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자의 권리와 교도소 직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입소 절차

직원이 입소 절차를 합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피구금자의 복지와 본질적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주는 좋은 관행이 세계 각국에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좋은 관행을 토대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시에 지역적 관습, 문화적 전통, 사회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조절될 수 있는 일련의 권장 사항들을 도출할 수가 있다.

모든 수용자들은 이러한 권리를 지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선고를 기다리는 공판 전 미결수이건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기결수이건 모든 수용자들에게 적용된다.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수용자, 소년소녀, 어린 수용자, 여성 등 특정한 수용자 집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부가적으로 적용된다. 이 지침서의 11장과 16장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영사 관계에 대한 협정, 36조

1. 파견국의 국민에 관한 영사 임무의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 (a) 영사관(官)들은 파견국의 국민들과 자유롭게 의사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들과 접촉할 수 있다. 파견국의 국민들도 파견국의 영사관들과의 의사 소통과 접촉에 관해 동등한 자유를 가진다.
 - (b) 주재국의 관할 기관은 파견국의 영사관에 그 관할 구역 내에서 그 국가의 국민이 체포되었거나 교도소에 이송되었거나 공판 때까지 구치되어 있거나 어떤 다른 방식으로 구금되어 있는 경우 그 국민

이 요청하면 자체 없이 파견국의 영사관에 알려야 한다. 체포되어 수감, 구금, 또는 구류되어 있는 사람이 영사관에 보내는 통신은 어떤 것이든 전술한 관할 기관에 자체 없이 전송(轉送)되어야 한다. 전술한 관할 기관은 당사자에게 이 (b) 항에 명시된 그의 권리를 자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 (c) 영사관(官)은 수감, 구금, 또는 구류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고 그와 대화하고 교신하며 그의 법적 대표자를 주선할 권리를 가진다. 영사관은 또 그들의 관할 구역 내에서 수감, 구금, 또는 구류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여 재판을 받게 주선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수감, 구금, 또는 구류되어 있는 국민을 위해 영사관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당사자가 명백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2. 이 조의 1항에 언급된 권리들은 주재국의 법과 규정에 부합되게 행사되어야 하지만 전술한 법과 규정이 이 조에서 부여된 권리들의 목적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법회 · 임의 · 약식 처형의 효과적 예방과 수사에 관한 원칙, 6조

정부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공인된 구금 장소에 구금되고 이송을 포함한 그들의 구금과 소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가족과 변호사와 그 밖의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즉시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을 강제적 실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언

모든 구금 장소에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공식적 최신 기록이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또 각 국가는 그와 유사한 기록을 중앙 부처에서 작성,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7

- (1) 수용자들이 수감된 모든 장소에는 쪽 번호가 매겨진 등록부에 수용된 각 수용자들에 관한 다음의 사항들이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 (a) 수용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
 - (b) 범행 동기와 범행 관할 당국
 - (c) 입소와 출소 일시
- (2) 유효한 구속 영장 없이는 그 누구도 교도소에 수감되어서는 안 되며 구속 영장에 적힌 세부 사항은 수감 전 등록부에 미리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1) 입소한 모든 수용자에게는 그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수용자들의 처우에 관한 규정, 해당 교도소의 규율 요건, 정보를 구하고 불평을 하는 공인된 방법 등에 대한 서면 정보와 그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다른 모든 문제들에 대한 서면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 (2) 수용자가 문맹인 경우에는 전술한 정보를 구두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구금이나 수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원칙, 원칙 13

모든 사람은 체포되는 순간과 구금이나 수감 상태가 시작될 때, 아니면 그 직후에 그의 체포, 구금, 또는 수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그의 권리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설명을 조목 별로 제공받아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구금이나 수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원칙, 원칙 16

- (1) 체포 직후, 또 구금이나 수감 장소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마다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은 가족이나 그가 선택한 다른 적절한 사람들에게 그의 구금이나 수감, 또는 이송 사실과 현재 구금되어 있는 장소 등을 통보해 달라고 관할 기관에 통보하거나 요구할 권리가 있다.
- (2) 구금이나 수감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절한 수단을 통해 그가 속한 국가나 아니면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정보를 전달받을 권리가 있는 국가의 영사관이나 재외 공관과, 또는 그가 난민이거나 정부간 기구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관할 국제 기구의 직원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 (3)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이 소년이거나 그의 권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관할 기관이 솔선해서 본 원칙에 언급된 바와 같은 정보를 전달해주어야 한다. 부모나 후견인에게 통보할 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구금이나 수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원칙, 원칙 18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은 그의 법적 변호인과 연락을 취하고 의논할 권리가 있다.

어떤 형태로든 구금이나 수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원칙, 원칙 24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이 구금이나 수감 장소에 입소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건강 검진을 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의료 조치와 치료는 필요할 때는 항상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와 치료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의무관은 수용자가 입소하면 가능한 한 빨리, 그 다음에는 필요할 때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발견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수용자를 진찰하고 검진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조치들이란 감염성이나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수용자들의 격리, 사회 복귀에 방해가 될 신체적, 정신적 결함에 대한 기록, 모든 수용자의 신체적 복역 능력 여부의 결정 등이다.

수용자 처우에 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38

- (1) 외국인 수용자들에게는 그들이 속한 국가의 재외 공관이나 영사관의 직원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2) 수용자가 해당 국가에 재외 공관이나 영사관이 없는 국가의 국민이거나 난민이나 무국적자인 경우에도 그들의 권익을 책임진 국가의 외교관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할 임무가 있는 국내, 또는 국제적 기구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실천 방법

유효한 사법 기관의 명령서가 있어야 한다

모든 수용자들은 공인된 구금 장소에만 수감될 권리가 있다. 교도소 당국의 첫 번째 임무는 교도소에 호송된 각 개인의 구금에 대한 유효한 명령서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일이다. 이 명령서는 사법 기관이나 다른 관할 기관이 발부하고 서명한 것이어야 한다.

수용자는 등록이 되어야 한다

교도소 당국은 수감 장소와 가능한 경우에는 중앙 기관에도, 모든 수용자들에 대한 최신 공식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 기록부에는 입소 날짜와 시간, 해당 수용자가 수감된 기관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록부에 기재된 정보는 법원과 다른 관할 기관이나 그 정보에 정당한 관심을 가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기록부는 일련 번호가 매겨져 제본이 되어야 한다

각 수용자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 수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수감에 대한 합법적인 재가가 있을 경우에만 사람들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고 법이 허용하는 기간만큼 수감하며 '실종', 고문, 학대, 법정 밖 살인 등의 인권을 위반하는 사건들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 기록부는 제본이 되어 있어야 하며 기재 사항들은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어 기재 사항들을 삭제하거나 부가하여 순서가 어긋나게 하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미결 수용자들에 대한 기록

0|직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로 구치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법적 구치 재가서에는 이 사람이 다음 번에 법정에 서게 될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가족과 변호인에 대한 조언

교도소에 수감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법적 대표자와 가족에게 자신들의 소재를 가능한 한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수용자가 다른 교도소나 다른 구금 장소로 이송되는 경우에도 항상 이러한 전달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판 전 수용자들의 권리는 이 지침서의 11장에 다루어져 있다. 어떤 수용자가 가족과 접촉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은 이 지침서의 12장에 다루어져 있다. 가족 중 노령자, 아동, 질환자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수용자들도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여성 수용자들이 그러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외국인 수용자

외국인 수용자, 특히 공판 전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국 정부의 대표자들과 연락을 취하거나 그들의 방문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들이 난민이거나 정부간 기구의 보호 아래 있을 경우에는 관할 국제 기구의 대표자와 연락을 취하거나 그들의 방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접촉은 피구금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외국인 수용자들이 고문이나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추방되거나 송환되지 않도록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건강 검진은 필수적

교도소에 입소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수용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의무관으로부터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어떤 치료라도 제공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유럽 고문 방지 위원회(CPT)는 건강 검진을 입소 당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2년 핀란드를 방문한 CPT의 보고서)

“폭행을 당한 흔적이 관찰되면 그것은 날낱이, 수용자의 관련 진술과 의사의 결론과 함께 충실히 기록이 되어야 하고 수용자가 요청하면 의사가 그에게 그의 부상 상태를 설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1995년 불가리아를 방문한 CPT의 보고서)

CPT는 “특히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자살을 예방하며 부상 상태를 때맞춰 기록하기 위해” 새로 입소한 수용자의 건강 검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1997년 터키를 방문한 CPT의 보고서)

유자격 간호사의 역할

모든 수용자들을 입소 직후에 검진할 의사를 배치하기가 어려운 교도소들도 있다. 상근 의사가 없거나 입소자의 수가 너무 많아 의사가 즉시 완벽한 임상적 검진을 하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것은 수용자들이 저녁에 도착할 때 특히 그러하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유자격 간호사가 모든 수용자들을 예비 면담하도록 조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의사가 건강이 나쁜 것이 명백하거나 간호사가 그에게 보낸 수용자들만을 진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조정한 후 의사가 입소 다음 날 새로 온 입소자들 모두에게 완벽한 건강 검진을 해줄 수가 있다.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수용자들의 권리, 그러한 건강 관리의 질에 대한 기준, 그 밖의 관련 문제들은 이 지침서의 4장에 다루어져 있다.

여성은 특별 보호가 필요하다

성적 학대를 받을 수도 있는 여성 수용자의 높은 비율을 감안해서 여성 교도소의 입소 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부가적인 교육을 받아 여성 수용자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신체 수색

교도소에 처음 입소한 모든 수용자들은 철저한 신체 수색을 받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다. 수색의 문제는 이 지침서의 5장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어져 있다.

사생활 · 가족 · 가정 · 서신을 존중받고 명예와 평판을 보호받을 권리(17조) 일반적 논평 16, 8항

개인적 수색과 신체 수색에 관한 한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그러한 수색이 수색 받는 사람의 존엄성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는 건강관리 요원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신체 수색을 받는 사람들은 동성 직원에게만 수색을 받아야 한다.¹⁾

1993년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남자 직원은 복장을 착용한 상태의 여성 수용자들에 대한 수색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법원은 여성 직원들은 남성 수용자들에 대한 그러한 수색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 법원은 이성(異性) 직원에 의한 수색의 영향이 서로 다르고 남성 수용자보다 여성 수용자에게 더 위협적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교도소 생활은 정의와 공정의 틀 안에서, 수용자들의 무력감을 최소화하고 그들도 권리와 책임을 가진 시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명백히 알려주는 방식으로 시작되고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은 처음으로 교도소에 오는 수용자들에게 특히 중요할 수가 있다. 처음 입소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수용자들이 교도소의 규정을 인식하고 교도소 당국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들이 교도소 직원들로부터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그들에게 교도소 규정집을 개별적으로 나누어주어야 한다.

문맹인 수용자들을 위한 배려

해당 지역의 언어를 말하지 못하거나 문맹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이 중요한 정보를 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규정을 읽고 설명해주거나 수용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는 누군가를 배치하거나 어떤 국가들의 경우처럼 비디오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배려를 할 수가 있다. 이 지침서의 9장에 설명된 바와 같이 수용자가 요청을 하거나 불평을 할 권리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1 UN 국제 인권 문서 HRC/Gen 1/Rev.5, 2001년 4월 26일

다수의 수용자들이 입소할 때 관리하는 방법

교도소 입소 구역의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하루 동안 입소하거나 출소하는 수용자들의 수에 따라 다를 것이다. 장기 수용자들을 수용하는 교도소에서는 한 달 동안 입소하거나 출소하는 수용자들이 몇 명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직원들은 큰 중 압감을 느끼지 않고 각 수용자들을 다루는데 합당한 양의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로 공판 전이거나 선고를 기다리고 있거나 단기간 복역하는 수용자들을 다루는 도시의 대규모 교도소에서는 매일 입소 구역을 거쳐가는 수용자들이 수십 명이나 심지어는 수백 명이 될 것이고 때로는 단 몇 시간만에 그처럼 많은 수의 수용자들이 거쳐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직원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하고 교도소 관리자들이 감독을 해야 한다.

입소 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교육

입소 구역은 교도소에 새로 도착하는 수용자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구역일 수도 있다. 수용자들을 받아들이는 직원들은, 교도소가 빈틈없는 조직을 가진 장소임을 수용자에게 명백히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확고히 통제하는 방법과 수용자가 이 낯선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올 때 느끼는 압박감을 이해하는 태도 사이에서 힘들지만 균형을 잡고 행동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든 직원들이 이러한 종류의 업무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입소 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특별히 선택되어야 하며 그들의 업무를 섬세하고 자신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생활 환경

자유의 박탈이 바로 처벌이다

국가는 수용자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해야 할 책임을 수행하는 동시에 그들에 대한 관리 의무도 완수하려면 어떤 기본적인 물리적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로는 적절한 숙박 시설의 제공, 위생 상태, 의류와 침구, 음식, 음료수, 운동 등이 있다. 사법 기관이 누군가를 교도소로 보낼 때에는 그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자유의 박탈뿐이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이 명확히 지켜져야 한다. 수감 생활에는 직원이나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신체적, 감정적 학대를 받을 위험까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또 물리적 상황이나 적절한 관리의 부재 때문에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사망할 위험까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돌봄 의무

일반 국민의 생활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들에서는 수용자들은 적절하고 인도적인 상황 속에서 생활할 가치가 없다는 주장이 때때로 제기되기도 한다.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은 사람들이 생존 경쟁을 해야 하고 그들 자신이나 자녀들을 위한 음식도 충분히 얻지 못하는데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 수감되어 있는가에 대해 왜 걱정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대답할 수는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국가가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사람의 자유를 박탈할 권리가 가진다면 국가는 그 사람이 적절하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대우받도록 보장할 책임도 져야 한다. 수감되지 않은 국민들이 버젓하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국가가 돌보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란 모든 국민들을 대하는 방식의 면에서 국가 기관들이 모

범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부족한 물자의 이용

보다 실용적 면에서 보면 공공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는 교도소를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만 수용하는 데 사용하고 사회에서 무시되는 개인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방법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건강상의 위험

수감 생활이란 다수의 개인들이 이동의 자유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매우 제한된 환경에 함께 수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것은 특별한 우려를 야기한다. 먼저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결핵 같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환기 상태가 열악한 그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수용자들이 그 질병에 전염될 위험이 매우 크다. 폭욕을 하거나 빨래를 할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피부병이나 기생충에 감염될 수도 있고 침구나 침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질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다. 추운 기후에서 따뜻한 의류가 없이 생활하는 수용자들은 폐렴에 걸릴 수도 있다. 운동도 못하고 햇빛과 신선한 공기도 쪘지 못하는 수용자는 근육의 긴장이 크게 감소되고 비타민도 부족하게 된다. 또 충분한 양의 음식이나 음료수를 섭취하지 못하는 수용자는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9-21

- 9 (1) 침실이 독방이나 독실인 경우 각 수용자는 야간 감방이나 방을 혼자서 사용해야 한다.
- 9 (2) 큰 공동 침실을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상황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수용자들을 신중하게 선정하여 같은 침실에서 자게 해야 한다. 해당 교도소의 성격에 맞춰 야간에는 정기적으로 감독을 해야 한다.
10. 수용자들이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모든 시설, 특히 모든 숙박 시설은, 기후 조건을 적절히 고려하고 특히 대기의 용적, 최소한의 바닥 면적, 조명, 난방, 환기 등을 고려하여 모든 건강 조건에 합당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11. 수용자들이 생활하거나 작업해야 할 모든 장소들에서는
 - (a) 유리창은 수용자들이 자연 채광으로 독서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커야 하고 인공 환기 장치가 있건 없건 간에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b) 인공 조명은 수용자들이 시력을 상하지 않고 독서나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12. 위생 설비는 모든 수용자들이 필요를 느끼는 경우 청결하고 점잖은 방식으로 자연적 요구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해야 한다.
13. 모든 수용자들이 계절과 지리적 지역에 따라 전반적 위생 상태의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빈도로, 그러나 온대성 기후에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해당 지역의 기후에 적절한 온도로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가 있고 또 해야만 하도록 적절한 샤워 시설과 목욕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14. 수용자들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교도소의 모든 구역들은 적절한 상태로 유지되고 항상 빈틈없이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15. 수용자들에게는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들에게는 건강과 청결에 필요한 화장용품들과 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16. 수용자들이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청결한 외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발과 수염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설비가 제공되어야 하고 남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면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17. (1) 사복을 입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모든 수용자들에게는 기후에 알맞고 건강을 유지하기에 적절한 의복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복은 결코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거나 굴욕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2) 의복은 모두가 깨끗하고 적절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내의는 위생의 유지에 필요한 만큼 자주 갈아입고 세탁해야 한다.
 (3) 예외적인 상황, 즉 수용자가 공인된 목적 때문에 교도소 밖으로 이송되어야 할 때는 항상 그에게 사복이나 다른 눈에 띄지 않는 의복을 착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18. 수용자들이 사복을 착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들이 교도소에 입소할 때 사복을 청결하고 착용하기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 모든 수용자들에게는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침대와 충분한 침구를 청결한 상태로 제공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주 갈아주어야 한다.
20. (1) 모든 수용자들에게 교도소 당국은 일상적 시간에 건강을 유지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좋은 품질의 것으로 신중하게 준비해서 제공해야 한다.
 (2) 마실 물은 수용자가 필요로 할 때마다 항상 제공되어야 한다.

21. (1) 작업을 하지 않는 모든 수용자들은 날씨가 허락하는 한 적어도 매일 한 시간 씩 옥외에서 운동을 하게 해야 한다.
 (2) 청소년 수용자들과 적절한 연령과 체격의 다른 수용자들은 운동 도중 신체 훈련과 레크리에이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공간, 시설, 장비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실천 방법

생활 공간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숙박 시설은 일정한 기본적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제 기준에는 수용자들이 충분한 생활 공간을 가져야 하며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공기와 햇빛을 쐬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과밀 수용

여러 국가들의 사법 행정에서 주요한 문제점들 중 하나는 수용자 과밀 수용의 정도이다. 이것은 재유치자들과 공판 전 수용자들을 수용하는 구치소에서 최악의 상태인 경우가 많다. 과밀 수용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과밀 수용이란 일인용으로 설계된 감방에 여러 사람들이 수감된 현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과밀이란 8 평방미터도 안 되는 감방에 12명에서 15명까지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과밀이란 큰 감방에 최고 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수감된 경우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국제 문서들에는 수용자 한 명당 필요한 최소한의 바닥 면적이나 입방 면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럽 이사회와 고문과 비인도적·굴욕적 처우·처벌 방지 위원회가 그렇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감방에서 보내는 시간과 생활 공간

수용자 한 명이 생활하는 데 얼마의 공간을 가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려 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하루 24시간 중 그 공간에서 보내게 될 시간의 길이이다. 그 공간을 잠잘 때에만 사용하거나 그 수용자가 다른 활동을 하며 낮 동안에는 다른 공간에 있게 된다면 작은 공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수용자들이 짧은 운동 시간에만 집단적으로 밖에 나가거나 면담이나 접견자가 있을 때 혼자서 감방을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 중 거의 모든 시간을 이 감방이나 방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에는 과밀 상태가 최악의 사태가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몇몇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는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공판 전 수용자들이나 단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용자들이 주로 수감된 교도소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이용 가능한 공간을 모두 이용하기

과밀 상태가 매우 심한 교도소에도 멀 활용되고 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다. 수용자들이 수감된 감방들이 심한 과밀 상태를 보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근에는 드물게만 사용되는 방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넓고 넓은 복도가 있는 교도소들에서는 수용자들이 낮 동안 집단적으로 감방에서 이곳으로 나와서 여러 형태의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도소 부속 교회나 기도 장소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장소에서 다양한 종류의 교육, 공예, 작업 등을 하도록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이다.

이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이용하기

수용자들을 그들의 생활 공간 속에 가둬두는 일을 정당화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을 감독할 직원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주장은 교도소 운영의 측면에서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개 수용자들의 집단을 밖으로 벌갈아 가며 데려 나올 수 있는 직원들은 충분하게 마련이다. 수용자들이 다른 수용자들을 교육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수용자들이 다른 수용자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거나 공예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독방과 공동 감방

사생활과 독거에 대한 태도는 문화권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서유럽과 북미에서는 수용자들은 대개 독실에서 자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기준은 유럽 교도소 규정에도 반영되어 있다. 다른 문화권들에서는 독실에 있는 것을 일종의 격리나 치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수용자들은 수용자 수에 비례하는 크기의 공동실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수용자들을 각 방에 배정하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강한 수용자들이 약한 수용자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수용자들의 의복

국제 기준에는 국가가 수용자의 건강에 필요한 대로 그를 따뜻하거나 시원하게 해 줄 의복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거나 굴욕을 주는 의복을 수용자들에게 입히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국제 기준에는 수용자들의 의복을 청결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 주거나 수용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도소의 제복

수용자들로 하여금 교도소가 제공하는 제복을 착용하게 하는 국가들도 많다. 이것은 보안과 평등을 근거로 한 주장에 의해 대개 정당화되고 있다. 눈에 띄게 보안상의 위험이나 탈출의 위험이 높은 몇몇 수용자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제복을 입게 해야 할 명백한 이유는 없다. 어떤 사법 관할 지역에서는 수용자들에게 공식 제복을 제공할 충분한 재원이 없어 수용자들이 스스로 의복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어떤 국가들에서는 탈출의 위험이 없는 수용자들에게는 사복의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여성 수용자들에게는 민간 의복의 착용을 허용하는 국가들도 많다. 외부 세계의 것과 비슷한 의복을 착용해서 개별적 정체성의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수용자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교도소의 제복은 형벌 체제의 일부가 되어서도 안 되고 착용자에게 굴욕감을 주려는 의도로 제공되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교도 행정 기관들은 수용자들에게 화살 무늬나 줄무늬가 있는 제복을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불필요한 관행을 폐기했던 것이다.

각 수용자는 모든 의복, 특히 피부 가까이에 닿는 의복을 정기적으로 세탁할 수 있도록 세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여성 수용자들의 특수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 지침서 13장에 설명되어 있다.

침구 침대의 침구의 성질은 해당 지역의 전통에 따라 다를 것이다. 많은 국가들에서는 방바닥보다 높은 침대에서 잠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 특히 따뜻한 곳에 위치한 국가들에서는 침구나 매트를 방바닥에 바로 펴서 자는 관습이 있다. 수용자들의 잠자리는 해당 지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요점은 모든 수용자들이 자기 자신의 침대나 침대 매트, 청결한 침구, 자기 자신만의 잠자는 공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과밀 상태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수용자들이 잠자는 공간이나 침대를 순번제로 나누어 쓰며 교대로 잠을 자야 하는 국가들도 많다.

이러한 관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과밀 상태가 그러한 정도에 이른다면 교도 행정 당국은 사람들을 교도소로 보내는 일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에 교도소의 이러한 상황과 교도소에 사람을 보면 결과가 어떠한가를 인식시켜야 한다.

화장실과 샤워 시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활동이 심하게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이 위생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수용자들은 화장실과 깨끗한 물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 있는 적당한 시설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수용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과밀한 생활 환경에서 수감되어 있는 경우 특히 중요하다. 마련된 시설은 수용자들에게 굴욕감을 주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남들이 보는 데에서 샤워를 해야 한다면 그들은 굴욕감을 느낄 것이다.

교도소에서 적절한 위생 시설을 사용하는 일은 자신을 청결하게 해서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로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과 직원들에게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서 필수적인 것이다. 위생 시설은 수용자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보장해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사용하기 쉽고 청결하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

여성 수용자들이 특히 절실히 필요로 하는 위생 시설은 그들의 품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음식과 마실 물

가장 기본적인 권리 책임들 중 하나는 교도 행정 당국은 모든 수용자들이 기아나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충분한 음식과 마실 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 국민이 영양가 있는 식품이 부족해서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에서 교도 행정 당국이 직면하는 곤경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법을 준수하는 국민들이 이 점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수용자들에게는 영양가 있는 충분한 음식을 제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주장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가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할 때에는 국가는 동시에 그들을 적절하게 돌볼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것은 저버릴 수 없는 절대적 책임이다.

식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교도 행정 당국은 교도소 안에 있거나 교도소에 속한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가능성과 수용자들이 경작을 하도록 주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검토 해 보아야 한다.

말라위에서는 교도 행정 당국이 비정부 기구인 국제 형사 개혁 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도소 부속 농장들을 향상시키고 그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사업을 진척시켰다. 이 사업의 도움을 받아 이 국가의 교도소들은 수용자들에게 농사 방법을 교육시키고 수용자, 직원, 직원의 가족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등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식사는 매일 24시간 중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오후에 하루의 마지막 식사를 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런 음식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많은 국가들에서는 용인되지 않는 일이다.

수용자들이 적절한 상황에서 식사를 하도록 배려가 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개별적 식기를 주고 이 식기를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잠자는 방에서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특정한 식사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수용자들은 깨끗한 물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공급되는 물은 위생 용으로 제공되는 물과는 별도의 것이어야 한다.

옥외 운동 많은 수용자들, 특히 공판 전 수용자들은 자연 광선과 신선한 공기도 제한적으로만 접할 수 있는 가운데 실내의 비교적 밀폐된 환경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들에게 매일 적당한 시간 동안 옥외에서 걸어다니거나 다른 운동을 하면서 지낼 기회를 주는 것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좋다.

신선한 공기를 쐬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장 시간은 매일 한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수용자들은 비교적 넓은 면적 위에서 걸어다닐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자연 식물의 성장을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한다. 몇몇 국가들에서 다수의 수용자들을 매일 한 시간 동안 담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마당에 내보내는 관행은 옥외에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한 조그만 마당은 사실상 지붕 없는 감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옥외에서 운동할 권리는 어떤 종류의 격리 상태에 있는 수용자건 어떤 종류의 처벌을 받고 있는 수용자건 간에 모든 수용자들에게 적용된다.

종교

종교적 신앙의 자유를 누릴 권리와 그 종교가 요구하는 바를 준수할 권리인 인권으로서 자유로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수용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교도소 규정에는 자격을 갖춘 종교의 대표자들이 수용자들을 만나려 정기적으로 교도소를 방문할 권리도 포함되어야 한다. 종교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원하는 모든 수용자들에게는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낮이나 밤의 특정한 시간에 사적으로 기도하거나 물로 씻는 여러 가지 의식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의복을 착용할 권리가 포함된다.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세계 인권 선언, 18 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란 종교나 신념을 바꿀 자유와 혼자서나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를 가르침, 실천, 예배, 계율 준수 등으로 표현할 자유도 포함한다.

시민 · 정치권에 대한 국제 규약, 18조 1항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란 스스로 선택한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선택할 자유와, 개별적이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예배, 계율 준수, 실천, 가르침 등으로 표현할 자유도 포함한다.

수용자 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 41 (1) 교도소에 동일한 종교를 가진 충분한 수의 수용자들이 있는 경우 그 종교의 자격 있는 대표자를 임명하거나 공인해야 한다. 수용자들의 수가 충분하고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대표자를 전시간제로 근무하도록 임명하거나 공인해야 한다.
(2) (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공인된 자격 있는 대표자에게 정기적으로 종교 의식을 거행하고 적절한 시간에 해당 종교를 가진 수용자들을 목회 활동의 목적으로 사적으로 접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3) 어떤 종교의 자격 있는 대표자는 그에게 접근하는 것은 어떤 수용자에게도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반면 어떤 수용자가 그 어떤 종교의 대표자의 접견을 거부한다 해도 그의 태도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42. 실행이 가능한 한 모든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제공되는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종교적 계율에 관한 서적과 그의 종파의 가르침이 담긴 서적을 보유함으로써 그의 종교 생활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도록 허용이 되어야 한다.

수용자들과 건강 관리

4

실천 방법

종교적 계율의 준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해서 자기의 종교의 계율을 준수할 권리까지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교도소 당국은 다음의 것들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 수용자들이 기도하고 종교 서적을 읽고 자신의 종교에 따라 필요한 회수만큼 의복을 착용하거나 의식(儀式)을 위해 셋는 일 등 자신의 종교에 따라 해야 할 바를 이행할 기회를 제공한다.
- 동일한 종교를 가진 수용자들이 종교적 축일에는 종교 의식을 위해 집단으로 모일 기회를 제공한다.
- 수용자들이 사적인 기도나 집단 의식을 위해 그들의 종교의 자격 있는 대표자의 방문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공인된 종교들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

0|러한 편의는 모든 공인된 종교 집단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주요한 종교들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소수집단 출신의 수용자들의 종교적 필요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종교 집단에 소속되지 않거나 종교를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수용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를 받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용자들은 종교적 소속이나 관행 때문에 부가적 특권을 받거나 더 나은 상황에서 생활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체 제

좋은 건강을 누릴 권리

수감된 사람들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좋은 건강을 누릴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밖의 넓은 사회에 제공되는 것과 적어도 동등한 수준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2조)은 다음을 확인하고 있다.

성취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모든 사람의 권리

수용자들은 추가적인 보호를 받는다

모든 인간의 이러한 기본권들에 덧붙여 수용자들은 그들의 신분 때문에 부가적인 보호를 받는다. 국가가 사람들에게 자유를 박탈할 때는 국가는 그들의 건강을 돌볼 책임도 진다. 국가가 그들을 구금하는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 때문에 필요하게 될 수도 있는 개인적 치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좋은 건강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 건강은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공동 사회의 구성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은 교도소라는 혼탁된 사회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수감 상황은 그 본질상 수용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복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교도 행정 당국에게는 건강관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과 교도소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시켜줄 상황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수용자들은 입소할 때보다 상태가 더 악화되어 출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교도소 생활의 모든 면에 적용되지만 특히 건강 관리에 적용된다.

수용자들은 건강상의 문제점을 안고 입소한다

수용자들은 관리 소홀, 학대, 또는 수용자의 입소 전의 생활 양식 등으로 초래된 기존의 건강 문제들을 안고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수용자들은 사회의 극빈 계층 출신인 경우가 많고 그들의 건강 문제는 이 사실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치료받지 않은 질병, 중독증, 정신 건강상의 문제 등을 지닌 채 입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수용자들은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며 수감 사실 때문에 정신 건강이 크게 악영향을 받은 많은 다른 수용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감염된 수용자들, 불량한 위생 상태와 위생 시설을 가진 과밀한 교도소는 해당 지역의 전염병의 확산의 면에서 볼 때 현저한 위협이다. 교도소의 위생이 선결 과제가 되어야 한다.

제 4 차 발트 제국 정상 회담 결과 2002년 6월 10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표된, 전염병의 위협에 관한 정부 수반들의 성명서

만연하는 전염병

많은 국가들에서는 높은 비율의 수용자들이 결핵, 간염, HIV/AIDS 같은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다. 교도 행정 당국은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들, 수용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접촉자들까지도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질병들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 질병들은 직원들과 접촉자들을 통해 교도소로부터 외부 사회로 확산이 되는 한편 이 수용자들이 나중에 출소하여 사회에 나가게 되므로 결국 사회의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다.

노령 수용자들

어떤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는 장기형이나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점차 더 많이 선고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들의 노령 관련 의료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도 행정 당국은 수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건강 관리를 위해 계획을 더 수립해야 할 것이다. 노령 수용자들에 대한 일반적 문제점은 이 지침서 14장에 다루어져 있다.

경济적으로 힘든 시기에도 이행해야 할 책임

일반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용자들은 가능한 최고의 건강 관리를 무료로 받을 권리가 있다. 유럽 고문 방지 위원회(CPT)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도 그 무엇도 국가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할 책임을 국가로부터 덜어줄 수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CPT는 또 생활에 필요한 것에는 충분하고 적절한 의료 조치도 포함된다는 사실도 명시하고 있다.

진료권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수용자들은 그들의 죄목이 무엇이든 간에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본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획득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특정한 국제 문서들에는 교도 행정 당국이 제공해야 할 건강 관리와 관련해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가 보다 명백히 표현되어 있다.¹⁾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원칙, 원칙 4

수용자들을 감호하고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할 교도소의 책임은 국가의 다른 사회적 목표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복지와 발달을 증진시킬 국가의 기본적 책임과 조화를 이루어 이행되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원칙, 원칙 9

수용자들은 그들의 법적 처지를 이유로 차별을 받음이 없이 해당 국가에서 제공되는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 유럽 위원회가 2001년 6월 10일부터 22일까지 고문과 고통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의 방지를 위해 물도비를 방문한 건과 관련해서 물도바 공화국 정부에 대해 작성한 CPT 보고서(CPT/Inf (2002) 11 para 69 and para 95)

어떤 형태로든 구금이나 수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원칙, 원칙 24

피구금자나 수용자는 구금이나 수감 장소에 입소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건강 진단을 해야 하며 그 후에는 필요할 때마다 항상 의료와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료와 치료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22

- (1) 모든 교도소에서는 정신 의학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적어도 한 명의 유자격 의무관의 진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진료는 해당 사회나 국가의 일반적 보건 기관과의 긴밀한 관련 아래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료에는 정신병에 대한 진단과 타당한 경우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에 대한 치료도 포함된다.
- (2) 전문가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든 수용자들은 전문 기관이나 민간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교정 시설 내에 병원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비, 비품, 약품 등은 병든 수용자들에 대한 의료와 치료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이곳에는 교육받은 합당한 의료 담당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 (3) 유자격 치과 의무관의 진료도 모든 수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25

- (1) 의무관은 수용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아야 하고 모든 병든 수용자들, 질병을 호소하는 모든 수용자들, 특별히 그의 주의를 끄는 모든 수용자들을 매일 진찰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62

교도소의 의료 업무는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방해할 수도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어야 한다. 필요한 모든 의학적, 외과적, 정신의학적 의료 업무는 그러한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수용자와 피구금자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어 건강관리 요원, 특히 의사의 역할에 관한 의윤리적 UN 원칙, 규칙 1

- 1 수용자들과 피구금자에 대한 의료를 담당한 건강관리 요원, 특히 의사들은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며 수감되거나 구금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질과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실천 방법

비교될 만한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수용자들은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나 주에서는 이러한 이용은 전문적 치료를 할 때로만 국한되어 있고 일반적 의료는 개별적 교도소 안이나 교도소의 특정 의료 시설에서 제공된다. 교도 행정 당국이 제공하는 의료나 간호 관리는 어떤 것이든 적어도 외부 사회에서 제공되는 것과 비교될 만할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 의료

교도 행정 당국은 각 교도소에서 최소한 다음의 것들을 제공해야 한다.

- 교도소에 입소시 초기의 건강 검진
- 정기적인 외래 진찰
- 응급시의 치료
- 수용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장비가 갖추어진 구역
- 유자격 약사가 투약하는 적합한 약품의 적절한 공급
- 물리 요법 시설과 치료 후의 재활을 위한 시설
-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특별 규정식

교도 행정 당국은 일반적 의료를 응급시에는 언제든 지체 없이 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최저 기준 규칙 52)

1997년 남아프리카의 고등 법원에 HIV 양성 반응자인 4명의 수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HIV 양성 반응자들인 수용자들이 AZT 같은 특수 약물을 비롯해 그들의 상태에 적절한 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러한 치료를 무료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정부는 그러한 높은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비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수용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고 그들이 국가의 비용으로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²⁾

공공 보건 기관과의 연계

수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모든 국면에서 교도소 당국은 교도소 밖의 공공 보건 기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지속적 치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과 직원이 보다 발달된 치료, 전문적 기준, 교육 등 혜택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1993년 교도소 내의 보건 문제를 강조한 공중 보건 고등 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된 후 교도소 내의 건강 관리에 대한 책임이 1994년 1월 입법된 법에 따라 프랑스의 교도소를 관리하는 법무부로부터 공립 병원 부문으로 이관되었다. 이 이관의 목표는 수용자들에게 교도소 밖의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건강 관리를 제공할 필요성을 촉진시키려는 것이었다. 그 첫 단계로서 모든 수용자에게 이러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수용자에게 사회보장 · 일반 건강 · 출산 보험 제도의 회원 자격이 자동적으로 부여되게 했다.

2) 반 빌존 대(對) 교정청
1997 SACR 50 (C)

건강 관리비용이 경구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필요한 의료와 치료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도소 건강 관리의 중요한 원칙이다.(UN 원칙, 원칙 24) 이것은 시민 사회에서 의료의 무료 제공이 제한되어 있는 국가들에서는 특별한주의를 요하는 문제일 것이다. 합병증이나 말기증상 때문에 고비용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기 수용자들의 수가 점증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것은 특히 문제가 될 것이다. 교도 행정 당국은 수용자들의 필요에 근거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필요한 치료가 너무 고비용이고 환자가 수용자라는 이유 때문에 제한적으로 제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일자 겸진

교도소에 처음 입소할 때 건강 검진을 받는 문제는 이 지침서의 3장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수용자들이 교도소에 처음 도착했을 때 건강 검진을 시행해야 할 몇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다.

- 건강 검진을 하면 의무 담당 직원들이 기존의 질병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가 있다.
- 건강 검진을 하면 마약의 금단 현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가 있다.
- 건강 검진을 하면 초기의 구금기간 중에 받았을 수도 있는 부상을 확인할 수가 있다.
- 건강 검진을 하면 적절한 교육을 받은 직원이 수용자의 정신 상태를 평가하고 자해의 위험이 있는 수용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수용자들이 입소하자마자 의사 한 명이 모든 수용자들에 대한 검진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교도 행정 당국은 적어도 적절한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각 수용자를 진찰하여 염려되는 사항을 의무관에게 보고하게 해주어야 한다.

입소 절차의 일부로 수용자에게 교도소 내 건강 관리 규정과 필요한 진찰을 받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전문의의 진찰

일반 의료, 치과, 정신과 등의 진료 시설에 떻붙여 교도 행정 당국은 전문의의 진찰을 받거나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교도소와 민간 사회의 의료 기관간에 긴밀한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교도소의 건강 관리 체계로는 모든 분야의 적절한 전문적 치료를 받도록 주선을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적 치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성과 노령 수용자 등 취약한 집단의 필요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용자가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려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교도 행정 당국은 적절한 수용자 호송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치료가 지체되거나 수용자가 다른 불안감을 갖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 수용자가 이송될 때의 상황도 그의 질환 상태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수용자가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때 때로 수용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의학적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교도 행정 기관들 중에는 입원치료를 요하는 심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교도소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 또 민간 병원 안에 특수 교도소 병동을 마련하여 보안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수용자가 민간 병원의 일반적 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한 경우에는, 특히 출산하는 여성이나 질병의 말기에 있는 수용자들을 위해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해 특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 CPT의 3차 일반 보고서에는 이 문제가 강조되어 있다.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된 수용자들을 구금을 이유로 침대나 다른 가구에 신체적으로 묶어 놓아서는 안 된다.³⁾

보건 환경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교도 행정 당국은 환자인 수용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일 외에도 수감 상황이 신체적, 정신적 복지를 해치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10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시설, 특히 숙박 시설은 기후 조건과 특히 공기의 용적량, 최저한의 바닥 면적, 조명, 난방, 환기 등을 적절히 고려한 모든 위생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12

위생 설비는 모든 수용자들이 필요를 느끼는 경우 청결하고 점잖은 방식으로 자연적 요구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13

모든 수용자들이 계절과 지리적 지역에 따라 전반적 위생 상태의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빈도로, 그러나 온대성 기후에서는 적어도 일 주일에 한 번씩, 또 해당 지역의 기후에 적절한 온도로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가 있고 또 해야만 하도록 적절한 샤워 시설과 목욕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26

(1) 의무 직원은 다음의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소장에게 조언해야 한다.
(a) 음식의 양, 질, 조리 상황, 제공 방식

3 199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CPT의 활동에 대한 유럽 이사회 3차 일반 보고서 (CPT/Inf (93) 12, para 36)

- (b) 해당 교도소와 수용자들의 위생과 청결 상태
- (c) 해당 교도소의 위생 시설, 난방, 조명, 환기
- (d) 수용자들의 의복과 침구의 적절성과 청결 상태
- (e) 체육과 운동을 담당하는 전문 직원이 없는 경우 체육과 운동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

실천 방법

교도소 환경이 미끼는 영향

국가는 수용자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책임을 떠맡았으므로 그들의 건강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복시켜주어야 할 절대적 책임이 있다. 수용자들이 구금되어 있는 상황은 그들의 건강과 복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교도 행정 당국은 그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수용자들의 건강과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구역들에서 적절한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수용 시설, 음식, 위생과 공중 위생에 관한 규칙 등은 모두 건강이 좋지 않은 수용자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질병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나 주는 과밀화 등 암도적인 문제점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원의 극심한 부족이 교도소의 건강한 상황을 조성하는 데 주요한 장애가 되어 있다. 각 수용자가 쓸 수 있는 면적, 자연 광선과 신선한 공기를 썰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전염병의 확산과 수용자의 정신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CPT는 2001년 몰도바 방문에 대한 보고서에서 자연 광선과 신선한 공기는 수용자들의 기본권이며 그들이 방문한 몇몇 교도소의 유리창에서 덧문이 제거된 것을 환영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⁴⁾

전염병

많은 교도 행정 당국에서는 전염병이 중요한 문제점이 되어 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에서는 결핵의 발병률이 전염병의 수준에 이르렀고 HIV 양성 반응자와 AIDS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몇몇 지역에서는 높은 비율의 수용자들이 HIV 양성 반응자거나 AIDS 환자이다. 교도 행정 당국들 중에는 입소시의 검진과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곳도 많다. 이러한 치료 프로그램은 국제 기구나 비정부 기구(NGO)와 공동으로 실시되는 경우도 많다.

국제 적십자 위원회는 내무부, 보건부와 공동으로 1998년 조지아주의 여러 교도소에서 결핵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실행되고 있다.

4 유럽 위원회가 2001년 6월 10일부터 22일까지 고문과 고통,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의 방지를 위해 몰도바를 방문한 건과 관련해서 몰도바 공화국 정부에 대해 작성한 CPT 보고서 (CPT/Inf (2002) 11 para 85)

- 수용자에 대한 검진이 도입되었다.
- 교도소에서 결핵이 발생한 구역을 완전히 보수하여 수용자들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과 더 향상된 생활 조건을 보장해 주었다.
- 의사와 간호사를 교육했다.
- DOTS 요법이 도입되었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62

이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이 요법을 충실히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높은 완치율을 보였
다.⁵⁾

질병의 전염에 대한 직원 교육

전염병의 발병률이 높은 국가들이나 주에서는 교도 행정 당국은 질병의 전염과 보호 방법에 대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어떤 국가들에서는 직원들에게 무료 간염 예방 접종을 일상적으로 해주기도 한다.

정신 질환

수감 상황은 수용자의 정신적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교도 행정 당국은 그러한 영향의 정도를 감소시켜주려고 노력해야 하고 개별적 수용자에 대한 그러한 영향을 검사하는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있는 수용자를 확인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직원들은 자해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징후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신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수용자들은 교도소에 방치되어서는 안 되고 적절한 장비가 있는 정신 질환 치료 시설로 이송되어야 한다.

교도소의 일반적 상황을 감시하기

국제 문서들은 교도소의 의무관들에게 그들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해서 수용자들의 건강과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건들을 검사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는 특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건강 관리 요원들은 건강 관리에는 치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전강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모든 국면이 포함되며 그것을 위해서는 교도소 내의 모든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개념을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힘든 과제일 것이다.

개별적 치료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개별적 수용자들은 적절한 수준의 진찰을 정기적으로, 비밀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진찰은 적어도 민간 사회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의학적 판단과 치료는 교도 행정 당국의 필요가 아니라 개별적 수용자의 필요에 따라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25

- (1) 의무관은 수용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아야 하고 매일 모든 병든 수용자들,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의 주의를 끄는 모든 수용자들을 진찰해야 한다.

5 Prison Healthcare News, 1 호, 2002 년 봄, 런던 킹즈 칼리지 ICPS

교정 시설의 의료 업무는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방해할 수도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결함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어야 한다. 필요한 모든 의학적, 외과적, 정신의학적 의료는 그러한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실천 방법

진찰 받기

교도 행정 당국은 병들었거나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매일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의무관에게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 이러한 진찰을 받는 환경은 환자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 보안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간수들이 수용자가 의무관에게 진찰 받는 모습은 볼 수 있지만 대화는 들을 수 없는 장소에서 진찰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사생활 보장

수용자들이 건강 문제를 진단 받는 상황은 일반 병원과 동등한 정도의 상황이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수용자들은 적절한 장비를 갖춘 진찰실에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수용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나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나 의료 담당 직원이 아닌 직원 앞에서 진찰을 받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비밀 보장

수용자들은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들로 하여금 의사의 진찰을 받겠다는 요청을 교도소의 다른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로 하여금 진찰을 받으려는 이유를 다른 직원에게 말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수용자들이 교도소에 입소할 때 진찰을 요청하는 절차를 그들에게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진료 기록

개별 수용자의 진료 기록은 의무관의 관리 아래 있어야 하며 수용자의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국가들에서는 교도소 건강관리 업무가 민간 건강 관리 부서의 관할 아래 있다. 그러한 관리 방법을 사용하면 위의 '건강관리를 받을 권리' 부분에서 논의한 이익 외에도 진료 기록은 교도소의 일반 기록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치료

진찰과 진단의 결과 제공되는 치료는 개별 수용자에게 최선의 것이어야 한다. 치료에 대한 결정은 비교적 비용이나 교도 행정 당국의 편의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건고 전 치료와 건고 후 치료

의무관들은 교도소 안에서 발생하는 건강 관리상의 문제들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수용자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질병도 확인하고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하려면 또 외부의 의료 기관과 적절한 공동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질병 말기의 수용자

어떤 국가들에서는 질병 말기에 있는 수용자를 조기에 출소시키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교도소의 의료 담당 직원이 내리는 진단이나 제공하는 조언은 전문가로서의 판단에 근거하여 수용자에게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수용자를 조기에 출소시키는 데 따르는 위험은 교도소 당국이 검토하고 평가해야 할 문제이다.

1993년 3월 제네바에서 발표된 WHO의 교도소 내 HIV 감염자와 AIDS 환자 관련 지침

51 보안과 사법 절차의 문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AIDS 중환자인 수용자는 가족과 친지와의 접촉을 용이하게 해주고 품위 있고 자유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상을 참작하여 조기에 출소시켜야 한다.

의무 직원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각 교도소는 수용자들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격을 갖춘, 충분한 수의 의무 직원들을 확보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22

- (1) 모든 교도소에는 정신 의학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적어도 한 명의 유자격 의무관이 있어야 한다. 의료 업무는 해당 사회나 국가의 일반 보건 행정 당국과의 긴밀한 관계 아래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 업무에는 정신과적 진단 업무와 적절한 경우에는 정신 이상 상태의 치료도 포함되어야 한다.
- (3) 자격을 갖춘 치과 담당 직원의 진료도 모든 수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49

- (1) 가능한 한 교도소 직원들은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 복지사, 교사, 직업 교육 강사 등 충분한 수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천 방법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보건 전문가들의 윤리 규약

1979년 국제 교도소 의료 업무 위원회는 '아테네 선서'라는 명칭의 윤리 규약을 승인하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약을 했다.

우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정신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든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각자의 전문가적 윤리의 범주 내에서 가능한 최상의 건강관리를 제공할 것을 서약한다.

우리는 수감된 개인들이 가능한 최상의 건강관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1. 어떤 신체적 처벌도 인정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삼간다.
2. 어떤 형태의 고문에도 참여하는 것을 삼간다.
3. 고지(告知)에 입각한 수감된 개인들의 동의가 없이는 그들에 대한 어떤 종류의 인체 실험도 수행하지 않는다.
4. 우리가 수감된 사람들과 전문가로서의 관계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획득된 모든 정보의 기밀성을 존중한다.
5. 환자의 필요에 근거하여 의학적 판단을 내리고 의학적 판단을 어떤 비의학적 문제보다도 중요시한다.

동질의 의료

교도 행정 당국은 수용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걸맞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전문 지식을 갖춘 충분한 수의 유자격 의료 담당 직원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일반 민간인을 위한 의료 시설과 제휴 관계를 맺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경우가 많다. 교도소의 모든 의료 및 건강 관리 담당 직원들은 교도소 밖의 유사한 직원의 사람들에게서 요구되는 것과 적어도 동등한 수준의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급료와 고용 조건도 그들과 동등한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완까지의 수용자

국제 연합 의료 윤리 원칙은 모든 보건 담당 직원, 특히 의사들에게 수용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치료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환자의 건강이지 교도소의 관리 문제가 아니다. 위에 인용한 아테네 선서는 의학적 판단이 환자의 필요에 근거하여야 하고 의학적 판단이 어떤 비의학적 문제보다도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의료 담당 직원은 교도소의 규율 담당 직원이나 행정 직원에 속하지 않는다. 교도 행정 당국이 의료 담당 직원을 직접 채용하는 몇몇 사법 관할 지역들에는 개별적 교도소와는 독립적으로 의료 담당 직원을 관리하는 별도의 체계가 있다.

의료 담당 직원이 교도 행정 당국의 요구와 전문가로서의 의료 윤리를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여러 가지 중요한 예와 그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대응책이 아래에 열거되어 있다.

의무 직원에 대한 지원

교도 행정 당국은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의료 담당 직원들에게 교도소 의료에서 특수하게 요구되는 사항들과 일반적 사항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교육이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도소에서 근무할 각오가 되어 있는 유자격 의료 담당 직원들이 부족한 경우가

교도소를 보안이 잘 된 상태로 안전하고 질서있게 운영하는 방법

교도소 간호사에 대한 지원

1998년 국제 간호사 회의에서는 각국의 간호 협회는 교도소 간호사에게 조언, 권고, 지원 등을 받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수용자와 피구금자를 돌보는 데 있어 간호사의 역할, 1998년 국제 간호사 회의]

고문의 문서화

1999년 인권 전문 단체들과 개인들이 연합한 단체가 이스탄불 의정서라는 명칭의, 고문과 학대의 효과적 문서화를 위한 일련의 원칙을 발표했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효과적인 문서화에 대한 원칙(이스탄불 의정서), 1999년]

신체 수색

1993년 세계 의학 협회는 수용자들의 신체 수색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성명서에는 수용자에게 의료를 제공할 의사의 책임은 교도소의 보안 체계에 참여할 책임과 결충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색이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수용자 신체 수색에 대한 성명서, 세계 의학 협회, 1993년]

단식 투쟁

1991년과 1992년 세계 의학 협회는 단식 투쟁자들에 대한 진료에 관여하는 의사들을 위한 지침을 채택했다. 이 지침에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동의와 비밀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입 여부에 대한 결정은 환자의 복지가 일차적 관심사가 아닌 제삼자로부터의 간섭 없이 개별적 의사에게 일임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단식 투쟁에 대한 말타 선언, 세계 의학 협회, 1991년, 1992년]

사형에 대한 관여

1981년과 2000년에 세계 의학 협회는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사형이나 처형 과정의 어떤 단계에 관여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결의했다. [사형에 대한 의사의 관여에 대한 결의, 세계 의학 협회, 1981년, 2000년]

전 직원의 교육

교도소 공동체의 본질상 교도 행정 당국은 수용자가 모든 종류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외에도 교도소의 전 직원이 기본적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교도소에서 누군가가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현장에 맨 먼저 도착해 응급 처치를 실시해야 할 직원이 건강관리 담당 직원이 아닌 경우가 아주 많다. 일반 직원도 이러한 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체제

보안과 정의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교정부(矯正部)의 재교육과 인권 관련 계획 사업의 공식 출범식에서 한 연설에서 교도소의 운영에서 안전과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의 사법 제도를 범죄에 대항하는 효과적 무기로 만드는 데는 교도소의 안전성이 필수적이다. 이미 유죄 선고를 받았거나 재판을 기다리는 수용자들이 여러분의 손에 맡겨질 때 그들 자신과 일반 국민은 그들이 법적으로 출감할 때까지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도소가 이 나라의 범죄율의 영구적인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을 대우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적 직업 정신과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크론스타트, 1998년 6월 25일)

적절한 운영

1990년 잉글랜드의 교도소들에서 매우 심각한 폭동이 몇 전 일어난 후 울프 상소 법원 판사가 제출한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들 중 하나는 안전, 관리, 정의 사이의 정확한 균형의 유지가 효과적인 교도소 관리의 열쇠라는 점이다.¹⁾

교도소 체제가 안정되려면 충족되어야 할 세 가지 요건이 있다. 그것들은 안전, 관리, 정의이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안전'은 수용자들의 탈출을 방지해야 할 교도소 당국의 책임을 말한다. '관리'는 수용자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해야 할 교도소 당국의 책임을 가리킨다. '정의'는 수용자들을 인도적으로 공정하게 대하고 그들이 사회로 돌아가도록 준비시켜야 할 교도소 당국의 책임을 가리킨다...

안전한 환경

안전, 관리, 정의 사이의 그러한 균형을 이루고 유지하는 일의 중요성은 교도소를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수용자들을 인도적으로 공정하게 대하면 안전성이거나 관리 기능이 감소될 것이라고 시사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와 반대로 탈출 방지와 확실한 통제라는 목표는 다음과 같은 질서정연한 환경 속에서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다.

1 1990년 4월의 교도소 소요에 대한 조사 보고서, 1991년 런던, 영국 정부 간행 출판국

- 수용자들과 직원들에게 안전한 환경
- 교도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대우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환경
- 수용자들에게 건설적 활동에 참여하고 석방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환경

전문적인 교도소 관리자는 이러한 균형이 확고히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명확한 일련의 규칙과 규정의 필요성

교도소를 비롯한 모든 질서 있는 공동체들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인식하는 일련의 규칙과 규정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교도소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은 직원이든 수용자든 각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각 집단은 그러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수용자는 나쁜 행동을 하면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좋은 행동을 하면 보상을 받아야 한다. 직원들도 자신들이 항상 그러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교도소 공동체에는 합의된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문, 징계, 제재 등의 명확히 규정된 제도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제도는 정당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적합한 보안 등급에 대한 적절한 사정

교도 행정 당국은 사법 당국이 자유를 박탈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람들을 구금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용자들은 교도소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현실적 상황을 받아들인다. 그들이 적절한 보안 조치 아래 있고 공정한 대우를 받기만 한다면 그들은 탈출을 시도하거나 교도소의 일상 생활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소수의 수용자들은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탈출한다면 어떤 수용자들은 지역 사회에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고 어떤 수용자들은 일반 국민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도소 당국은 각 수용자에게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적절한 보안 상황을 적용하기 위해 각 개인이 제기하는 위험의 정도를 사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교도한 보안과 통제는 위험할 수도 있다

세계 도처의 교도소들에서는 교도소 당국이 정당한 정도를 넘어 과도한 보안과 통제를 시행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 제한 프로그램이 배제된 강압적인 보안 조치
- 잔인한 통제 방법
- 징계 신문에서 정당성의 결여
- 불법적 처벌

또 어떤 국가들의 교도소에서는 교도소 관리자들이 교도소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강력한 수용자 집단들로 하여금 다른 수용자들과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두 극단적 상황에서는 질서정연한 공동체가 붕괴되므로 수용자들과 직원들이 폭력적인 학대 행위를 하거나 무질서가 야기되거나 탈출 사건이 일어나거나 수용자들을 위한 건설적 활동이 부재할 수가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무력의 사용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개별적이나 집단적으로 모든 다른 중재가 실패로 돌아간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무력의 사용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 방법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교도소는 폐쇄된 사회로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권력의 남용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력의 사용에 대한 상세하고 투명한 일련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 문제는 2장과 3장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보안 프로그램과 사회 재통합 프로그램 간의 균형

국제 문서들은 수감의 목적을, 범법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그들의 재활을 보장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도 행정 당국은 보안 프로그램과 수용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프로그램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러한 균형은 교도소와 개별적 수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안 수준을 규정하는 일련의 명확한 절차가 있을 때 잡힐 수가 있다.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원칙, 원칙 4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할 교도소의 책임은 한 국가의 다른 사회적 목표들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복지와 발전을 증진시킬 국가의 기본적 책임과 조화를 이루어 이행되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58

정의 선고나 자유를 박탈하는 그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목적과 정당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범법자가 사회에 복귀했을 때 법을 준수하고 자활하는 생활을 기꺼이 하려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할 때까지를 수감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63, 2항

서로 다른 집단들에게 필요한 바에 따라 다양한 정도의 보안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방된 교도소는 탈출을 방지하는 어떠한 물리적 보안 조치도 하지 않고 재소자의 자제력에만 의존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신중하게 선정된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에 가장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수갑, 사슬, 족쇄, 구속복 등 억제 도구들은 처벌로 부과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나아가 사슬이나 수갑은 억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억제 도구들도 다음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a) 이송 중 탈출의 예방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수용자가 법정이나 행정 관리 앞에 설 때는 그러한 도구는 제거되어야 한다.
- (b) 의료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른 의학적 이유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c) 수용자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재물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통제 수단이 실패한 경우 소장의 명령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소장은 즉시 의료 담당 직원과 의논하고 상위 행정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유럽 교도소 규정, 규정 39

이 규정은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33에 다음의 조건을 부가한다.

- (a) 필요한 경우 이송 중 탈출의 예방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수용자가 사법 당국자나 행정 당국자 앞에 설 때는 해당 당국자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러한 도구는 제거되어야 한다.
 - (b) 의료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 또 그의 감독 아래 의학적 이유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사슬과 수갑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실천 방법

보안 조치의 등급

수용자들에게 부과되는 보안 조치는 그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 이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에는 적어도 세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다.

높은 수준의 보안 조치가 필요한 수용자들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그들을 더 잘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안 조치의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처우도 더 인도적인 것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실용적인 것이다. 보안은 비용이 많이 들고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용도 더 높다.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도 이상의 높은 보안 등급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합리적인 일이다.

처음 입소할 때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해 수용자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해당 수용자가 탈출하는 경우 사회에 초래할 위험의 정도

해당 수용자가 독자적으로나 외부의 도움을 받아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

그 다음에 수용자를 해당 위험 수준에 적절한 보안 상황에서 관리해야 한다. 해당 수용자의 복역 기간 동안 내내 그의 보안 조치 등급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보안 조치의 여러 등급

- 중구금(重拘禁) 보안 조치는 탈출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것은 가장 위험한 수용자들에게만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용자의 주변과 교도소 내에 고도의 물리적 보안 조치가 취해진다. 직원들이 수용자들의 내부적 행동을 세밀하게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 대 일로 감독한다. 어떤 교도소에서든 소수의 수용자들에게만 이러한 수준의 보안 조치가 필요한 경향이 있다.
- 경구금(輕拘禁) 보안(개방된 조치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다) 조치는 사회에 위험을 거의 초래하지 않으며 탈출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수용자들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리적 보안의 수준이 낮다. 수용자의 주변에 대한 보안 조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 내부의 보안은 야간에 숙박하는 감방의 문을 잠그는 정도이다. 비폭력적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과 석방 날짜가 가까운 장기 수용자들에게 이러한 보안 조치가 적절할 것이다.
- 중간 구금 보안 조치는 대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적용된다. 그들은 탈출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 보안 조치를 적용할 만큼 신뢰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중간 보안 조치는 담장 등 수용자의 주변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포함한다. 교도소 내부의 모든 문은 대개 잠가 두어야 하지만 이러한 수용자는 교도소 내에서는 다른 구역으로 직원의 면밀한 감독 없이 이동해도 좋다고 신뢰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사법 관할 지역들은 중구금 보안 시설의 개발에 상당한 재원을 투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만들었으니 이용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자들을 이러한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독방 수용

보안 등급의 한 형태로 장기간 독방에 수감하는 것은 항상 피해야 한다. 이 문제는 6장에 언급되어 있다.

위험도에 대한 사정(查定)

위험도에 대한 사정은 그들 자신, 직원, 다른 수용자, 외부 사회 등에 위협이 되는 수용자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많은 국가들에서 보안상의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이 개발되어 왔다. 고려해야 할 문제들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해당 수용자가 탈출하는 경우 일반 시민에 대한 위험의 정도
탈출을 시도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은 전례
공판 전 수용자들인 경우 증인들에게 위협을 가할 가능성
해당 수용자가 유죄 선고를 받은 죄목
대개 죄목에 따라 내려지는 형기(刑期)
다른 수용자들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

미결 수용자들에 대한 보안 수준

여러 국가의 교도소 체계에서는 모든 미결 수용자들에게 고도의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항상 그러하지는 않으며 이미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류의 수용자들에 대한 보안상 위험도의 평가도 가능해져야 한다.

교도소 관리자들이 결정해야 할 보안 등급

어떤 국가들에서는 선고를 내리는 판사가 해당 수용자에게 적용될 보안 조치의 양식을 명시하고 있다. 또 어떤 국가들에서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용자들이나 어떤 특정한 법에 따라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에게는 개인적인 위험도 평가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보안 조치의 수준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개별적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기를 결정하는 것은 사법 당국의 역할이지만 교도소 당국이 전문 영역의 합의된 기준에 따라 보안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보안 등급에 대한 경기적 검토

개별 수용자에 대한 보안 조치 수준은 형기의 복역이 진행됨에 따라 정기적 간격을 두고 검토되어야 한다. 형기의 복역이 진행됨에 따라 수용자의 보안상 위험도는 일반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복역 기간 중 보다 낮은 보안 등급을 적용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곧 좋은 행동에 대한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

물리적 보안 조치

물리적 보안 조치들은 교도소 건물의 구조, 그 건물의 벽의 견고도, 창문의 창살, 감방의 문, 주변의 벽과 담장의 설계 명세, 감시탑 등이 있다. 또 차물쇠, 감시 카메라, 경보 장치, 무전기 등 보안을 보조하는 물리적 장치들도 있다.

물리적 보안 조치들을 계획함에 있어 필요한 보안 수준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과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감방과 공동 침실에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자연 광선과 신선한 공기를 접하기 위한 기준에도 부합되는 건축 설계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카메라, 감시 장치, 경보 장치 등 보안에 대한 물리적 보조 장치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보조 장치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합법적인 보안 요건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만 한다.

개별 수용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교도소의 설계 면에서 수용자들이 직원이 관찰할 수 없는 곳에 모일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은 교도소들이 많다. 이것은 교도소의 보안과 개별 수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교도 행정 당국은 이러한 구역들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조치를 개발해야 한다.

보안 절차 이것은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절차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 공간에 대한 수색과 개인에 대한 수색의 절차이다.

각 교도소에는 수색을 진행해야 할 상황, 수색에 사용할 방법, 수색의 빈도 등이 상세히

설명된 일련의 명확히 이해된 절차들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들은 탈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수용자들과 그들을 접견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확립된 것이어야 한다.

수용자들이 생활하고 작업하고 모이는 모든 장소를 정기적으로 수색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문과 자물쇠, 창문과 창살 등의 보안 장치가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방과 공동 침실 같은 생활 공간을 수색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용자의 보안 등급에 따라 해당 수용자의 사적인 물건도 때때로 수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직원들은 탈출 시도나 금제품의 은닉 등을 간파하고 예방하는 동시에 수용자의 품위를 존중하고 사적인 소유물에 대한 존중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러한 수색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수색 절차는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수용자가 현장에 참석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용자에 대한 수색

개별 수용자들, 특히 중등이나 최대 보안 조치가 적용되는 수용자들이 탈출 시도를 하는 데 사용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을 해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적 마약 같은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신체 수색을 해야 한다. 그러한 수색의 강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면 수용자들이 무리를 지어 작업장에서 생활 공간으로 이동할 때는 현재 모든 항공기 승객들이 받는 것과 같은 종류의 신체를 더듬는 수색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그 밖의 경우, 특히 개별 수용자들이 신체에 무언가를 은닉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든가 고위험도 수용자로 지정이 된 경우는 이른 바 알몸 수색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수색을 할 때는 수용자는 의복을 전부 벗고 신체에 아무 것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수색 절차

신체 수색을 실시할 때는 직원은 상세한 일련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 절차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한 수색이 허용되는 상황을 규정해야 한다.

수용자들에게 어느 시간에든 완전히 발가벗게 강요한다든가 해서 수색 과정에서 굴욕감을 느끼는 일이 없게 해주어야 한다.

수용자들이 동성의 직원에게 수색을 받게 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보안 담당 직원이 수용자의 신체 내부를 수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접견인에 대한 수색

수용자를 접견하려 온 사람들이 합당한 보안 요건을 위반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일련의 절차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는 접견인의 신체 수색을 할 권리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한 절차는 접견인 자신은 수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교도소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과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누릴 접견자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접견인을 수색하는 절차는 아동, 여성, 그 밖의 취약 집단의 필요를 충분히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법적 대표자, 사회 복지사, 의사 등 전문직 접견인에 대한 수색 절차는 전문 분야에 대한

비밀 접촉을 할 권리와 보안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전문직 단체와 합의된 것이어야 한다.

직원에 대한 수색

교도소 직원도 금지되거나 불법적인 물품을 교도소 내로 밀반입함으로써 보안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도 적절한 수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면 직원들이 수용자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지된 물품을 교도소 내로 반입해 달라는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질 수도 있다.

그 밖의 보안 절차

당연하게 적용되어야 할 다른 보안 절차들도 있다. 이러한 절차들은 다음과 같다.

- 하루의 일정한 시각에 하는 점호
- 정확한 수용자가 석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석방 절차
- 우편물과 전화에 대한 선택적 검열. 이 점은 8 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다.

역동적 보안

절차에 따른 물리적 보안 조치가 교도소 생활의 필수적 특징이지만 그것도 그 자체로 충분하지는 않다. 보안은 수용자들과 상호 작용하고 교도소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식하고 있으며 수용자들로 하여금 긍정적 방식으로 계속 활동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 직원의 기민성에도 달려 있다. 이것은 흔히 역동적 보안이라고 불린다. 미국에서는 역동적 보안의 원칙에 입각한 교도소들은 때때로 직접 감독 교도소라고 알려져 있다. 직원과 수용자간에 정기적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빈틈없는 감시원이라면 정상과는 다르고 보안에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응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용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직원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교도소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함으로써 탈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역동적 보안의 강점은 보안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조기 단계에 인식하여 사전 행동을 취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치는 전문적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는 경우에 가장 잘 시행될 수가 있다.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 감독 교도소에서는 폭력, 소음, 만행 등이 상당히 감소되어 수용자들을 관리하기가 더 용이해졌다고 한다. 직원들과 수용자들 간의 교류가 증가되어 직원들은 문제점을 예상하고 사전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직접 감독 교도소의 수용자들은 형기를 마친 후 생산적인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도 시사되고 있다.²⁾

수용자들 중의 밀고자

많은 교도 행정 당국들이 어떤 수용자로 하여금 다른 수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익명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관리나 보안을 위반하려는 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밀고자가 발견되면 다른 수용자들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분노를 표출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 밀고자들도 다른 수용자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밀고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나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교도소 내에 긴장, 의심, 폭력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 이 지침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된 바와 같이 직원들이 수

2) 직접 감독 :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도소 (뉴욕 오스 웨고군 보안관부 간행)

용자들을 개인적으로 이해하려는 체제를 개발해야만 보안과 관리 문제에 대해 훨씬 더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리적 억제 도구의 사용

모든 교도소 조직에는 물리적 억제 도구의 사용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주요한 직원들은 이 도구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들에는 다음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억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
- 누가 그러한 도구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가
-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 누가 규정된 절차가 정확히 시행되는지를 감시해야 하는가

물리적 억제 도구의 사용은 최후의 수단

수갑, 사슬, 족쇄, 구속복 등의 물리적 억제 도구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구는 다른 물리적 보안 조치의 대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건물의 물리적 보안 조치가 매우 약하다는 이유로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수용자들의 발목이나 팔목에 사슬을 채워 벽이나 긴 쇠막대에 묶어두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물리적 억제 도구는 수용자가 다른 장소로 이송될 때 교도소 안이나 교도소 밖에서 당연한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도구가 사용될 때마다 수용자의 위험도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억제 도구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적 수용자를 통제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수도 있다. 그 사람이 폭력적 행동을 멈추자마자 억제 도구를 제거해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수용자의 자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억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해를 방지하는 다른 방법들도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억제 도구의 사용에 대한 어려움

근무 중인 고위 직원이 물리적 억제 도구의 사용을 허가해야 하고 그것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보증해야 한다. 교도소장과 의료 담당 직원은 가능한 한 빨리 폭력적 행위나 자해 행위 때문에 억제 도구로 구속된 수용자를 보고 필요한 경우 억제 도구의 지속적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억제 도구의 사용에 대한 결정과 절차는 고위 당국의 면밀한 감시를 받아야 하고 최선의 관행에 따라 공인된 독립적 감시자의 면밀한 감시를 받아야 한다.

교도소 밖에서의 보안

수용자가 교도소의 경계를 벗어나 다른 교도소나 법정이나 민간 병원으로 이송될 때에는 교도소 당국이나 다른 적절한 당국이 해당 수용자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수용자가 병원에서 일정 기간의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보안 등급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보안 조치가 의료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기간 동안 필요한 물리적 보안 조치의 성질은 개별적 보안상의 위험도에 따라 다르지

만 원칙은 항상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가능한 최저 보안 등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가장 흔한 역제 도구는 수갑이다.

수용자에게 물리적 역제 도구를 사용한 상태로 법정으로 호송했을 경우 재판장이나 재판관이 달리 허가하지 않는 한 법정의 심리가 있기 전에 이러한 도구를 제거해주어야 한다.

보안과 외부 세계와의 접촉 간의 균형

수용자들을 적절한 보안 상태 아래 두어야 할 필요성은 외부 세계와 접촉을 유지할 그들의 권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보안의 필요성이 아무리 강해도 수용자가 합당한 상황에서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일은 계속 허용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개별적 수용자의 권리와 보장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또 이것은 개별적 수용자의 사회 복귀 과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 위에 수용자들이 외부 세계와 접촉하면 교도소 내의 안정성이 증진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접촉을 권장하는 것이 교도 행정 당국에게도 유리하다. 8 장에는 수감 기간 중의 외부 세계와의 접촉 문제가 더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다.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모든 사람들을 강제적 실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언, 7조

전쟁의 위협, 전쟁 상태,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 어떤 다른 국가적 긴급 사태 등 어떤 상황도 강제적 실종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을 강제적 실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언, 10조 2항

그러한 사람들의 구금과 그들이 구금된 장소, 또는 장소들, 이동한 장소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관련자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그들의 가족, 변호인, 또는 그 정보에 대한 정당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즉시 전달되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구금이나 수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원칙, 원칙 18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과 그의 법적 변호인의 면담은 법집행관이 볼 수 있는 데서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 구금이나 수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원칙, 원칙 19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은 특히 가족 구성원의 접견을 받거나 서신을 왕래 할 권리가 있고 법이나 법적 규정에 명시된 합당한 조건과 제한 사항에 의거하여 외부 세계와 연락을 취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구금이나 수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원칙, 원칙 29

- 1 관계법과 규정이 엄격히 준수되도록 감독하기 위해, 구금이나 수감 장소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과는 별도의 관할 기관이 임명하고 그 기관에 책임을 진 자격 있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 2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은 구금 장소나 수감 장소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합당한 조건에 의거하여 본 원칙 1 항에 따라 그러한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완전히 비밀로 대화할 권리가 있다.

고문 및 비인도적·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유럽 협약, 3조 8항 2절(c)

(유럽 고문 방지 위원회는) 사람들이 자유를 박탈당한 어떤 장소든 무제한 방문할 수 있고 그러한 장소에서 제한 없이 이동할 권리도 가진다.

고문 및 비인도적·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유럽 협약, 3조 8항 3절

이 위원회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과 비밀로 면담할 수 있다.

실천 방법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권

3장의 입소 절차에서 어떤 사람이 자유를 박탈당할 때 가족 구성원과 법적 대표자에게 알릴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교도소 당국이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어떤 사람이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의 구금 장소를 알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상황은 결코 없다. 유일한 예외는 당사자가 알리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뿐이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법적 변호인을 접견할 권리와 이 접견을 사적으로, 즉 교도소 직원이 듣지 못하는 데에서 할 권리로 가진다. 공판 전 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할 권리는 11장에 다루어져 있다.

외부 접촉의 구성 요소로서의 독립적 감시

10장에서는 구금 장소에 대한 독립적 감시와 감사의 문제가 다루어져 있다. 고문 및 비인도적·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유럽 위원회는 이러한 형태의 감사를 수행하는 가장 권위 있는 단체들 중 하나이다. 고문 및 비인도적·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유럽 협약에 근거하여 이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이 협약은 이 위원회의 위원들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권리와 그들을 사적으로 접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해당 지역의 독립적 감시 단체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

러한 교도소 관리 방법이 보안, 안전, 질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통제와 잘 정돈된 지역 사회 간의 균형

수감에는 자유의 박탈이 포함되고 그에 따라 이동의 자유가 축소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교도소 당국은 수용자들이 적법한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교도소라는 곳이 모든 관계자들이 신체적 안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합법적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임을 보장해주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보안상의 제약을 가할 책임이 있다. 수용자들의 일상 생활과 이동에 대한 통제의 수준은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이상의 것이라면 안 된다.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27

규율과 질서는 확고하게 유지되어야 하지만 안전한 관리와 질서정연한 공동 체 생활에 필요한 정도 이상의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60, 1항

교정 시설의 체제는 교도소 생활과 자유로운 사회 생활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57

법법자를 외부 세계와 격리시키는 수감과 그 밖의 조치들은 그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그의 자발적 결정권을 박탈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교도소의 조직이 정당한 격리나 규율의 유지에 부수되는 경우 외에는 그러한 상황에 내재하는 고통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면 안 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28, 1항

어떤 수용자도 장계 수단으로 교도소의 부역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실천 방법

필요 이상의 제약은 불가

교도소 당국의 임무는 수용자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법원의 선고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처벌에 내재하는 고통을 증가시킬 더 이상의 제약을 수용자에게 가하는 것은 교도소 당국의 역할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당국은 교도소 생활과 자유로운 사회 생활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7 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수용자가 형기를 마친 후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서 일반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려는 것이다. 교도소 직원들도 이

다른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일에 수용자를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잘 관리된 교도소에서는 모든 수용자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다. 7장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그들에게 교도소 생활 도중에 건설적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그러한 건설적인 활동 중에는 취사장이나 친료소에서 일하는 등 교도소의 일상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 일도 있을 것이다. 기술이 있거나 고등 교육을 받은 수용자들에게는 그러한 기술과 교육을 이용해서 다른 수용자들을 돋도록 권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수용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수용자들을 이용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일은 직원이 부족할 때 때때로 일어난다. 그러한 수용자에게는 다른 수용자들을 감시하거나 관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수용 시설, 음식, 그 밖의 시설 등의 면에서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치는 항상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확고하지만 합법적인 관리가 필수적

전문적 교도 행정 당국이 직면한 과제는 교도소들을 보안이 잘 되고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장소로 유지하지만 교도소들이 강압적이거나 잔인한 방식으로 운영되지는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점은 가혹하지도 관대하지도 않은 일관된 접근 방식이다. 대다수의 수용자들은 교도소 직원들에 의한 확고하고 공정한 관리를 환영할 것이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교도소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공백을 강력한 의지를 가진 수용자들이 메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도소 상부로부터 확고한 관리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 개별적 직원이 그들 자신의 비공식적인 관리 방식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 되든 대다수의 수용자들에게는 교도소 생활이 매우 불유쾌한 것이 될 것이다.

통제와 질서가 붕괴되는 경우

최선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도소의 경우에도 질서가 붕괴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개별적 수용자가 미리 계획된 바에 따라, 아니면 갑자기 광포해져서 직원이나 다른 수용자들을 공격하는 일은 항상 일어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수용자의 한 집단이 교도소의 합법적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소동을 일으키거나 불모를 잡아서 공동으로 반항을 시도할 수도 있다. 교도소마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일련의 명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절차는 국제 문서에 근거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54, 3항

(1) 교도소의 관리들은 수용자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방어, 탈출기도, 법이나 규정에 근거한 명령에 대한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신체적 저항 등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힘을 사용할 때에도 엄격히 필요한 이상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 사건을 교도소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2) 교도관들은 공격적인 수용자를 제지할 수 있도록 특수 신체 훈련을 받아야 한다.

(3)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용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무기를 휴대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직원들이 무기의 사용법을 교육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무기가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법집행관의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 원칙 9

법집행관은 죽음이나 중상의 절박한 위협에 대향해서 자기 방어나 다른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수반하는 특히 중대한 범죄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위험을 제기하면서 법집행관의 권위에 저항하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그러한 사람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화기보다 덜 극단적인 수단이 위의 목적들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에 대해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화기를 의도적으로 치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불가피한 경우에만 일어나야 한다.

법집행관의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 원칙 15

법집행관은 관리 중이나 구금 중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당 기관 내의 보안과 질서의 유지에 엄격히 필요하거나 개인적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집행관의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 원칙 16

법집행관은 관리 중이나 구금 중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죽음이나 중상의 절박한 위협에 대향해서 자기 방어나 다른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나 또는 원칙 9에서 언급된 위험을 제기하는, 관리 중이거나 구금 중인 사람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집행관의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 원칙 17

전술한 원칙들은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특히 규칙 33, 34, 54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도관들의 권리, 의무, 책임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없이 확립된 것이다.

고문의 방지와 처벌을 위한 미주 국가간 협약, 5조

피구금자나 수용자의 위험한 성격도 교도소나 감화원의 보안의 부족도 고문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실천 방법

항상 예방이 대용보다 더 낫다

교도소 직원이 배워야 할 첫 번째 요점은 항상 예방이 치료보다 더 낫다는 것이다. 주요한 사건이 사전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거의 모든 경우에 개인이나 집단의 측면에서 긴장이 쌓이고 있다는 사전 징후가 있게 마련이다. 바로 이 점에서 역동적 보안의 이점이 명백해진다. 경계를 늦추지 않는 직원들이 긴장이 감도는 생활 구역이나 작업 구역에 들어가면 그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즉시 의식할 것이다. 그들은 긴장된 공기를 감지할 것이다. 그들은 모든 수용자들을 잘 알고 있으므로 불안정하거나 폭력을 쓰겠다고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수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 폭력 사태의 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을 다룰 수가 있다. 직원들의 전반적 접근 방식이 공정하고 일관성이 있다면 문제를 일으켜 다른 수용자들을 선동하려는 수용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역동적 보안 조치가 잘 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적이거나 집단적인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다.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

직원과 수용자간의 좋은 전문적 관계는 역동적 보안의 필수적 요소이다. 그러한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관계를 잘 활용해서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통해 사건의 가능성을 점차 감소시키거나 질서를 회복할 수가 있다. 이러한 방법이 실패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질서를 물리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무력 사용의 최소화

수용자를 직접 대하는 모든 직원들에게는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해서 수용자를 물리적으로 복종시킬 수 있는 기술을 훈련시켜야 한다. 그들은 우월한 신체적 힘을 과시하며 말썽을 부리는 수용자들을 단순히 무력으로 제압하지는 말아야 한다. 많은 경우에는 이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가능한 경우에도 그 결과 직원과 수용자 모두 중상을 입을 수도 있다. 직원들이 그들 자신이나 관련 수용자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고도 수용자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제어 기술과 저지 기술을 직원들에게 훈련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교도소 관리자들은 이러한 기술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모든 직원들이 기본적 기술을 구사할 수 있고 충분한 수의 직원들이 고급 기술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기 수용자들을 직접 대하는 직원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곤봉 같은 무기를 휴대할 수도 있다. 좋은 관행이란 이러한 무기를 과시하는 듯한 방식이나 위협적인 방식으로 휴대하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 관행은 곤봉을 바지의 전용 포켓에 넣어 감추고 있지만 쉽게 꺼내 쓸 수도 있게 하는 것이다. 대형 곤봉은 일상적으로 휴대해서는 안 되고 긴급 사태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점에 보관되어야 한다. 수용자들을 직접 대하는 직원이 화기나 그와 유사한 무기를 휴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좋은 관행이 아니다. 이러한 무기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수용자들의 손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화기의 사용 어떤 교도소 체제에서는 교도소 주변을 경계하는 직원들이 화기를 휴대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직원들은 이러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받고 있어야 한다. 무기는 해당 직원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즉각적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어떤 수용자가 탈출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만 그에게 발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발포자가, 탈출하는 수용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탈출자를 발포 이외의 방법으로는 정지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다른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야 한다. 법집행관의 힘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은 이 점을 아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교도 행정 당국은 모든 종류의 힘이나 화기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절차를 확립해야 하며 그러한 것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도 수립해야 한다. 또 그러한 절차에는 힘이나 화기가 사용된 사건의 수사를 위한 공식적 조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문제들 중 다수는 2장에서 이미 다루어진 바 있다.

중구금(重拘禁) 보안 상황

어떤 사법 관할 지역에서는 수용자 집단은 중구금 보안 상황 아래 대개 고립되어 수용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상황은 법정 선고에서 명시된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교도 행정 당국이 시행한 보안 평가의 결과 이러한 상황 속에 수용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 문서들은 모든 제한은 최소한 필요한 정도만 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27

규율과 질서는 확고하게 유지되어야 하지만 안전한 관리와 질서정연한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정도 이상의 제한은 가해서는 안 된다.

실천 방법

초(超) 중구금 보안 조직의 최소한의 사용

다수의 수용자들이 초(超) 중구금 보안 조치가 된 시설에 배정된 경우 많은 수용자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그들이 제기하는 잠재적 위협에 비해 과도하고 균형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 규칙으로는 수용자들의 행동이 안전과 보안에 너무나 큰 위협을 제기하기 때문에 교도 행정 당국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경우에만 그들을 초(超) 중구금 보안 조치가 된 상황에 수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한 상황에 수용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동안에 한해야 하며 개별 수용자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상황을 변경해 주어야 한다.

실질적인 격리는 피해야 한다

특별 보안 조치가 된 시설들 중에는 직원이나 다른 수용자들과의 교류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실질적 격리 조치가 취해지는 곳이 많다. 그러한 조치 자체가, 수용자들이 처음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원인이 된 행동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증명할 중요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문제 수용자

때때로 소수의 수용자들이 교도소 내의 통제와 질서의 필요성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는 특수 조치가 취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수 조치를 적용할 수용자의 수는 절대적으로 최소한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지역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유럽 이사회 각료 위원회가 위험한 수용자들의 관리와 처우에 대해 각 회원국에게 보낸 권고 R(82) 17호는 다음과 같다.

각료 위원회는 유럽 이사회법 15조 b항에 따라 … 회원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1 위험한 수용자들에게 가능한 한 일반적인 교도소 규정을 적용한다.
- 2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보안 조치만을 취한다.
- 3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보안 조치를 취한다.
- 4 보안 조치를 취할 때에는 상이한 종류의 위험에는 상이한 대처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찰작한다.
- 5 강화된 보안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가능한 한 감소시킨다.
- 6 강화된 보안 조치 때문에 초래될 수도 있는 건강 문제에 필요한 모든 관심을 기울인다.
- 7 해당 보안 조치가 허용하는 정도에 따라 교육, 직업 훈련, 작업, 여가 활동 등과 그 밖의 활동을 제공한다.

- 8 강화된 보안 관리 상황에 처해진 기간과 적용된 보안 등급이 필요 이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 검토 제도를 확립한다.
- 9 강화된 보안 조치가 된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적절한 수의 특정 장소와 직원과 모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10 위험한 수용자와 관리와 처우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

실천 방법

격리는 좋은 관행이 아니다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데는 적어도 두 가지 관리 모형이 있다. 첫째 모형은 그들을 혼자서나 다른 한 두 수용자들과 함께 격리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수용자들은 하루 24 시간을 자신의 생활 공간에서 보내게 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 상황에서는 수용자들은 다른 활동을 하거나 외부적 자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아무 할 일도 없다. 그들은 창살이 둘러진 옥외의 렇 빙 운동 공간에서 한 시간 동안 혼자서 기분전환을 하도록 허용 받을 수는 있다. 그들은 감방을 나설 때마다 알몸 수색을 당하고 수갑이 채워진다. 어떤 국가들에서는 수용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수 년을 보낼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아무리 위험한 수용자라도 이러한 방법으로 대우하는 것은 좋은 관행이 아니며 이러한 방법은 적절한 관리 기술의 부재 때문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소규모 시설에 격리하는 방법

그보다 훨씬 긍정적인 관리 모형은 문제의 수용자들을 최대 10 명까지 소규모 시설에 함께 수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파괴적인 수용자들을 개별적 격리보다는 ‘집단 격리’를 통해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의 운영 원칙은 전문적 훈련을 받은 직원이라면 가장 위험한 수용자들에게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의 목적은 보안이 된 경계 구역 내에서는 수용자들이 해당 시설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하고 교도소의 정상적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수용자들은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에만 격리되고 그 때에도 단기간 동안만 격리될 것이다.

통례가 아니라 예외

위에 언급한 유럽 이사회 권고의 가장 중요한 결론들 중 하나는 이러한 수용자 집단은 통례가 아니라 예외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장기적 수용자들이 모두 일반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으므로 문제의 수용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장기 복역 중인 대부분의 수용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전문성을 시험하는 방법

교도관들이 합법적인 행동 양식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소수의 매우 폭력적인 수용자들을 다루는 방식은 교도소 직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일 뿐만이 아니다. 교도소 당국이 일반 사회인들을 대신해서 다른 인간들에 대한 존중심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방식은 또한 진실로 모든 사람의 인간성을 시험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체제

교도소에서는 법에 의한 짜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법의 지배가 교도소 정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끝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교도소에서 공격을 받은 사람도 다른 공공 장소에서 공격을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형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어떤 교도소에서든 중대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일반 사회에서와 유사한 수사 체제를 발동시키는 것이 정상적 관행이어야 한다. 어떤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는 교도소 내에서 수사 임무를 수행할 특별 판사나 검사를 임명한다. 또 어떤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는 마치 해당 범죄가 교도소 밖에서 일어난 것처럼 일반 검사나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할 기회를 부여한다. 교도소에서는 중대한 사건이라도 범죄 수사 당국은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간주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예로는 어떤 수용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 당하는 경우나 그 누구도 중상을 입지 않은 폭행 사건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무기가 사용되거나 뼈나 사지가 골절된 폭행 사건은 대개 검사나 경찰에 회부될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한 가지 방법은 교도소 당국과 수사 당국이 합의를 통해 검사나 경찰이 넘겨받기를 원하는 사건들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규율 위반 행위를 다루는 일련의 명확한 절차의 필요성

교도소는 그 본질상 대규모 집단의 사람들이 자의에 반해 감금된 상황에서 관리되는 폐쇄된 기관이다. 그러므로 때때로 몇몇 수용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도소의 규칙과 규정을 위반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한 사건이란 다른 사람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든가 자신의 것이 아닌 물건을 뺏는다든가 일과에 순응하기를 거부한다든가 합법적 명령에 불복한다든가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교도소 내로 몰래 들여온다든가 하는 등의 일이다. 이러한 사건을 다루는 일련의 명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관리 규율

01 장에서는 교도소 규율을 위반하는 사건을 다루는 절차가 다루어진다. 교도소 규율의 성격은 일차적으로는 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외부의 수사나 사법 기관에 회부되어서는 안 된다.

외부 기준

사건이 외부 당국과 관계된 경우에는 외부 당국은 피고가 수용자가 아닐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징계 절차의 공정성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어떤 형태로든 구금이나 수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원칙, 원칙 30

- 1 구금이나 수감 기간 동안의 규율 위반 행위가 되는 피구금자나 수용자의 행위의 유형, 부과될 수 있는 징계 처벌의 적용과 기간, 그러한 처벌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 당국 등은 법이나 법적 규정에 의해 상세히 명시되고 합당하게 공표되어야 한다.
- 2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은 징계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는 그러한 조치를 고위 당국이 조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35

- 1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은 그와 같은 부류의 수용자들의 처우에 대한 규정, 해당 교도소의 규율상의 요건, 정보를 얻고 불평을 하는 공인된 방법, 그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교도소 생활에 적응할 수 있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다른 문제들에 대해 서면 통지서를 제공받아야 한다.
- 2 수용자가 문맹인 경우에는 전술한 정보를 그에게 구두로 전달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29

- 1 다음 사항은 관할 행정 당국의 법이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a)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
 - b) 가할 수 있는 처벌의 유형과 기간
 - c) 그러한 처벌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 당국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30

- (3)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수용자는 통역을 통해 항변하도록 허용이 되어야 한다.

유럽 교도소 규정, 규정 36(2)

그릇된 행위는 관할 당국에 즉각 보고되어야 하고 당국은 부당하게 지체하지 않고 그 보고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28(1)

어떠한 수용자도 징계를 명목으로 교도소의 부역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실천 방법

자연적 정의가 존중되어야 한다

행정상의 정의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연적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 원칙들 중 첫 번째 것은 모든 수용자들에게 교도소의 규칙과 규정이 어떤 것인지 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교도소에는 교도소 규율의 위반 행위에 해당해 공식적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하는 행위나 태만 행위를 명확히 열거해주는 일련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법률 문서의 효력을 가져야 한다.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규정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규정은 교도소에서 널리 공표되어야 하며 처음 입소하는 모든 수용자에게 이러한 규정집을 한 부씩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3 장에 언급되어 있다. 문맹인 수용자도 이러한 규정을 확실히 숙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절한 절차의 준수

징계 절차에 따라 고발당하는 수용자는 고발 내용과 고발한 사람을 미리 알 권리가 있다. 부당한 자체 없이 관할 당국은 고발 내용을 심리해야 한다. 수용자 자신은 적절한 항변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고발하는 직원도 입수 가능한 증거를 수집할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절차를 지체할 기회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수용자가 심리를 기다리며 격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부당한 자체 자체가 비공식적 형태의 처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용자들이 외부 기관의 수사를 기다리며 격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할 당국은 고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고발 사건은 관할 당국에서 심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는 교도소의 규율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독립적 치안 판사나 특별 판사가 임명된다. 그러한 조치의 이점은 사법적 독립이 보장된다는 점과 적절한 절차가 준수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다. 터키 같은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는 규율 위반 행위 심리를 위한 특별 위원회가 있다. 또 영국 같은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는 교도소장이 이러한 고발 사건을 심리하게 되어 있다.

교도소 고위 관리자들이 규율 위반 행위를 심리할 때에는 그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그들이 심리하게 될 사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는 점이 보장되어야 한다.

적절한 항변을 준비하기

모든 고발 사건에서 고발당한 수용자가 심리에 출석해야 한다. 해당 수용자는 제시되는 증거를 듣고 사건을 설명하는 직원에게 질문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수용자가 어떤 이유로든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는 자신을 도와줄 다른 사람을 소환하도록 허용이 되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처벌이 기록할 가능성 있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법적 대리인을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항소권

해당 수용자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그는 더 높은 사법 당국에 항소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비공식적 경고

어떤 교정 당국에서는 공식적 조치를 취하기 전 사소한 규율 위반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경고를 하는 관습이 있다. 이것은 수용자에게 그의 행동이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끔 주는 데는 유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고의 사용 방법이 공정하고 일관성을 갖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것은 비공식적 제재 방법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처벌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것이어야 한다

명확히 정의되고 공표된 규율 위반 행위의 목록에는 그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수용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처벌의 완벽한 목록이 수반되어야 한다. 규율 위반 행위 목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의 목록은 적절한 기관이 승인한 법률 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처벌은 항상 정당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되어야 한다.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30

- (1) 어떠한 수용자도 그러한 범이나 규정의 조건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되어서는 안 되며 동일한 행위에 대해 두 번 처벌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 (2) 어떠한 수용자도 그가 저질렀다고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항변을 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받지 않은 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31

처벌, 어두운 감방에 가두는 벌,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벌은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로는 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32

- (1) 좁은 감방에 감금하다든가 식사량을 줄여 처벌하는 일은 의무관이 수용자를 검사해서 그가 그러한 처벌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한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
- (2) 위와 동일한 원칙이, 수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불리할 수도 있는 모든 다른 처벌에도 적용된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처벌이 규칙 31에 명시된 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 (3) 의무관은 그러한 처벌을 받고 있는 수용자들을 매일 방문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이유로 처벌의 종결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에게 조언을 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33

수갑, 사슬, 족쇄, 구속복 등 억제 도구들은 처벌로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유럽 교도소 규정, 규정 37

집단 처벌, 체벌, 어두운 감방에 감금하는 벌, 그 밖의 모든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은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로는 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인권과 민족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협약, 7조 2항

처벌은 개인적인 것이어야 하고 범법자에게만 가해져야 한다.

미주 인권 협약, 5조 3항

처벌은 범법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실천 방법

처벌은 항상 개별적으로

수용자는 위에 설명한 절차에 따라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공식적 심리가 실시되고 그 결과 유죄가 인정된 후에만 처벌될 수 있다. 그러한 심리는 개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집단적으로 규칙에 대한 복종을 거부한다든가 다수의 수용자들이 습격을 한 경우에는 각자의 진술이 별도로 심리되고 처벌도 개별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

어떠한 수용자도 동일한 범법 행위에 대해 두 번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습격이나 탈출기도 사건 등 해당 범법 행위가 외부의 법정에 회부된 경우 그 다음에 교도소 내부에서 규율 위반에 대한 심리가 다시 열려서는 안 된다.

행정적 처벌

행정적 처벌로는 공식 기록에 남는 경고, 작업에서의 제외, 임금의 몰수(교도소 내 작업에 대해 임금이 지불되는 경우), 오락 활동 참여에 대한 제한, 어떤 사유물의 사용에 대한 제한, 교도소 내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다. 처벌에는 서신 왕래나 접견 등을 통한 가족과의 접촉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이유는 제쳐놓고라도 이것은 수용자의 가족이나 친지에 대한 처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처벌에 대한 제한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심리 결과 부과된 처벌은 항상 저질러진 위반 행위에 적절한 것 이어야 한다. 모든 형태의 처벌, 어두운 감방에 감금하는 처벌,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처벌은 특히 금지되어 있다. 식사량의 감축은 일종의 처벌로서 비인도적인 처벌이라고 현재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1957년 최저 기준 규칙이 UN에서 승인된 이후 널리 확산된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